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개발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좌담회 :

사회적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이슈 몬드라곤 파고르의 실패

미디어 공공성 현황과 그 회복 가능성

한글서체
한글서체

생협평론 2014 봄 (14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 iCOOP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기태 김아영 이대중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간사	장인혜
편집디자인	황인혜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4년 3월 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전 화	02) 2060-1373/4
구 독	1권 3,000원
e-book	교보문고, 리디북스, 알라딘, yes24에서 무료 구독 가능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4 봄 (14호)

길잡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향해서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7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1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 (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29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43
좌담회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55
이슈		
몬드라곤 파고르의 실패	이시즈카 히데오 (협동조합연구소 생명과 생활 주임연구원)	72
モンドラゴン、ファゴールの失敗	石塚秀雄	89
미디어 공공성 현황과 그 회복 가능성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107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15
돌발논문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선옥 (기록노동자)	116
르뽀		
밀양, 보통 사람들의 싸움을 기억하라	희정 (르뽀작가)	129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④		
조합원이 주인 되는 방송, 4월1일 시작합니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37
서평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 바나나』	이웅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148
협동조합소식		
사회적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가 되다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51

사람 중심의 경제를 향해서

엄찬희(편집위원장)

사회적 경제의 실현은 자본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효율성 논리로 왜곡하고 있는 경제를 사람이 주인인 원래의 기능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이다. 이 정의는 필자가 이해한 사회적 경제이다. 이러한 정의를 글의 처음에 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다양하게 이해되고, 그러한 이해를 근거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생협평론> 이번 호 ‘사회적 경제’ 특집은 개념 정의에 천착하기 보다 바람직한 실천 모델 찾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독자들의 오독을 피하기 위해서 <생협평론>이 이해하는 사회적 경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다. 물론 앞에 언급한 정의는 순전히 필자의 것이긴 하지만, 이번 호 특집 필자들과 좌담회 참석자들이 주신 의견과 주장들은 그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생협평론> 차원의 개념 정의로 정리해도 무리하지 않겠다.

<생협평론> 14호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세우는 것에서 나아가 바람직한 모델을 탐색해보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촉발한 것 중의 하나는 국회의 움직임이었다.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법제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생협평론>은 현장의 전문가들, 연구자들로부터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주장들을 모으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이에 따라 4편의 묵직한 글을 모을 수 있었으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것과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담은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협동조합의 역할을 고민하도록 독자를 이끄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지역 경제 개발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선 6기 지방정부가 할 일을 제안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개발”(김성기 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드러난 이슈들을 정책과 관련해서 조목 조목 풀어낸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경제의 향방이 제대로 잡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혹여라도 속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겉만 아름답게 포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내비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 모델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은 좌담회에서도 나타난다.

스페인 몬드라곤그룹의 파고르 가전이 도산한 이유를 연구 분석한 글이 이시즈카 히데오 일본의 협동총합연구소 주임연구원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디어의 공공성이 어떻게 훼손당했는지를 소개하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신태섭 상임대표의 글은 <생협평론> 공공성 시리즈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파업 이후 손배 가압류 소송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이선옥 작가의 글과,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의 현장을 생생히 담은 르췌작가 희정의 글,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소비자가 참여한 언론협동조합 국민TV의 준비 과정을 소개한 김은남 기자의 글이 각각 돌발논문, 르췌, 협동조합연재 꼭지로 기획되었다. 매호 빠지지 않고 귀중한 생각거리와 정보를 주어온 이동수 작가의 1컷 생협만평과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주임의 세계 협동조합 소식은 적은 지면을 차지하지만, <생협평론>에서 소중한 정도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리고 싶다. [icoop](#)

바람직한 경제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좌담회

-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¹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협동조합이 다른 종류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의미에서 성공한 것 이상 이룬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만약 협동조합이 다른 형태의 기업과 똑같은 사업상의 기술과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지지와 충성을 획득하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만약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는 때때로 당혹스러운 방향으로 변화할 때 협동조합이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여 다른 종류의 경제적·사회적 질서를 새로 창조해 가면 안 되는 것인가?” (레이들로 A. F.,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1980년 모스크바 ICA총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00)

협동조합운동의 딜레마

레이들로 박사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많은 협동조합들이 명쾌한 답을 하기 어려워할 것이다. 오히려 협동조합들이 상업적 성공이라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 레이들로 박사의 문제 제기를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진 이 조직의 생존력과 퇴행에 관한 고민들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의 비사회성을 덜어낼 사회적 목적을 협동조합에게 기대하는 것은 조직의 경제적 성공이라는 선결과제를 해결하고야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다. 이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경제적 성공의 줄타기에서 협동조합이 늘 경제적 성

1 이 글은 필자가 『녹색평론』100호(2008)에 실었던 원고임을 밝혀둔다.

공을 우선에 놓고, 경제조직으로서 생존할 때만이 사회적 의미성을 성취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굳히는 명분이 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공은 그들이 갖는 부족한 자본, 취약한 인적자원, 미약한 경영능력 그리고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가능하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연구결과이니 타당한 지적임에 틀림없을지 모른다. 더군다나 협동조합의 많은 활동가들이 동감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가지는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이들 연구들이 언급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공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협동조합들의 시장 경쟁력일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 속에서 독특한 조직의 문화와 구조를 가진 협동조합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장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넉넉한 자본력과 유능한 인적자원, 탁월한 경영능력, 그리고 진전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 네 가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대체 어느 수준까지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일까? 아니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갖출 수 있는 방안은 협동조합 내부에 존재하는 것일까?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가장 일반화된 기업형태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자산과 사업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자본으로 인적자원과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자본을 축적해간다. 하지만 조합원의 공동소유,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원리를 갖는 협동조합의 사정은 이와는 다르다. 웹(Webb)의 까칠한 지적처럼 현실 자본주의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개인주의에 가까운, 조합원 구성원들의 배타적인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조합원 구성원들에 의한 배타적인 조직구조는 자본주의 시장경쟁 속에서 협동조합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많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협동조합들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협동조합의 원칙은 조직의 정관에 잠시 보관해놓고

그 경쟁의 논리에 충실하게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앞의 네 가지 성공의 전제조건을 머릿속에 되뇌며 말이다. 이것이 현실의 협동조합들이 보이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이다. 공간에서 인심 나뒹, 늘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보며 협동조합 간의 연대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아주 먼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시장 경쟁력은 정말 조화되지 못하는 상호 배타적인 영역일까? 분명한 점은 협동조합이 시장 경쟁력을 위해 일반 기업과 동일한 시장전략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시장전략의 불일치는 그들이 직면한 딜레마의 정중앙에서 그들의 생존과 퇴행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해법을 찾아서, 사회적 경제의 전통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협동조합운동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19세기 유럽의 결사체주의(associationism)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자본주의의 태동기였던 그 당시의 도시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에서 벗어나 원자화된 개인으로 모든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에 대처해야 했다. 가장 먼저 노동자들이 직면할지 모르는 질병, 사고, 사망,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생겨난 공제조합을 시작으로, 소규모 생산자들의 지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이용 가능한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조달을 지원하였던 소비자협동조합 그리고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노동자들의 경제적 수탈을 막기 위한 노동자협동조합 등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에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이었다. 노동자들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인 결사로 이루어진 이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탄생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사회성을 덜어낼 근본적인 변혁이나 개선을 위한

사상적 기반 속에서, 시장 경쟁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먼 것이었다. 차라리 국가나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만족되지 못하는 필요에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니 생산자협동조합은 시장판매가 아닌 소비자협동조합의 구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조직이었던 것처럼, 협동조합들 사이의 다양한 내부자 거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협동조합 간의 연대라는 하나의 규범적 원칙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는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19세기 노동자들의 결사체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경제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위협받게 된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가족임금을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생산력의 폭발적인 증가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를 열었다. 또한,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국가와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들의 집합적 이해들이 양자의 영역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경제는 주변화되어 갔다. 많은 공제조합들이 공공복지 영역으로 편입되어 갔으며, 각종 노동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들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통한 시장의 기업이 제공하는 편익보다 우월한 체제가 되지 못하였다. 이 같은 환경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서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그리고 다양한 결사체 조직들은 애초 결사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잃은 채, 시장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을 유일한 조직의 존재이유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기회주의적인 변질을 하였거나 급격하게 경제주의로 경도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시장의 일반기업보다 우월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실현할 만한 매력적인 경제활동 방식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조합 구성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나 혹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는 규범적 강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마저도 여의

치 않은 상황이다. 이것이 협동조합운동이 시장 경쟁력 속에서 생존과 퇴행의 이정표를 지나 그저 시장부문의 일부로 자신들을 주변화시키게 된 이유이다.

제도약의 발판,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발흥

한 사회의 어느 제도나 혹은 조직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퇴행의 과정은 그 사회의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그것들의 존재 가치가 사회적으로 채택되거나 혹은 기각되는가는 거의 그 사회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어갔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는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대체하였던 가부장적 국가와 완전고용의 시장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진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다. 완전고용의 종결과 복지재정의 축소는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구조변화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배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더 이상 20세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다시금 대두된 배제와 결핍의 시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주체들이 생성되었으며, 이탈리아의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s)’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은 1991년에 ‘사회적협동조합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제도화되었지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등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조직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많은 지역 조직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합법적 기업형태인 협동조합 형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이라 칭하였던 것이다. 1991년 법제화 이후 공식 명칭이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으로 개정된 이들 조직들은 기존의 협동

조합들이 취해온, 조합 구성원들의 이해에 기초한 조직의 목적 및 구조를 지역사회의 전체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해서 생성된 새로운 조직형태들은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유럽 차원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여 유럽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명칭을 통해 ‘시민집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조직들’로 이들의 활동들을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차원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인 EMES는 그들 대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상황들을 묶어서 책으로 발간하였는데, EMES라는 네트워크 명칭은 이들 연구사업의 과제명이기도 하고 발간된 책의 이름이기도 한 『사회적 기업의 등장L'EMergence de l'Entreprise Sociale』의 첫 음을 모아서 만들어졌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경제적 영역에서는 ①재화의 생산 혹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②높은 수준의 자율성, ③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④최소한의 유급노동 등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사회적 영역에서는 ⑤지역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명확한 사회적 목적, ⑥시민집단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업의 추진, ⑦자본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민주적 의사결정권한, ⑧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적 특성, ⑨제한된 이윤분배의 원칙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EMES의 의장인 드푸르니(Jacques Defourny)는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의 교차점에 위치하면서 두 조직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한 시민집단들의 활동들은 20세기 중반부터 공공부문의 일부로 재편되거나 시장부문의 일부로 전략해서 주변화 되어버린 전통적인(old) 사회적 경제와 구분하여 ‘새로운 사회적 경제’(new social economy)라 칭해지기도 한다. 19세기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배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집합적 대응전략이었다면, 20세기 말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야기되어 온 실업과 복지후퇴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전략이라 할 만하다.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주체였던 많은 협동조합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조직의 목적과 구조를 설계하였는데,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general interest cooperatives*)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이루어졌다. 물론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들은 지역의 필요들에 대응하면서 새롭게 사회적 의미성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지역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지역의 필요에 기초한 복합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소유를 추구하면서 포괄적인 사회적 자본들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경제의 재사회화, 사회적 경제의 의미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비사회적인 경제의 모습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하여 경제제민(經世濟民)이라 하였던 경제라는 사회적 행위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협소화되면서 시장의 경쟁 논리로 그것은 비사회적인 것이 되어 갔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에서 대규모의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복지제도는 후퇴하거나 시장화되어갔다. 세상은 시장에 의해서 다스려졌으며 백성들은 경제를 통해 구제받지 못하였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념적으로 의지하였던 재분배와 시장교환 그리고 호혜의 역할 분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장기실업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으며,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많은 이들은 방치되어갔다.

사회적 경제는 오랫동안 경제의 사회적 기능을 사회구성원들의 호혜적 결속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19세기 노동자들의 결사체와 20세기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들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의 사회적 기능을 복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자원배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 경쟁에 의존하는 경제적인 자원배분 방식과 차별화된다.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자원들은 주로 조세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사회연대기금으로서 국가 예산의 지출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속 가계 소비를 통해서 형성된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 속에서 구제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저 유권자로서 정치에 등장하게 되고, 가격신호에 의해 민감한 소비자로서 시장에 등장하면서 사회적 자원 배분 메커니즘에 소극적으로 개입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그들 백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제의 사회적 개입 전략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권력과 자본을 자원으로 하여 작동하는 국가와 시장에 대해서 연대의 자원을 가지고 양자로부터의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추구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에 기초해서 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사회적 소유의 참여주의 모델을 실천하고 그 속에서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소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필요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필요는 지방정부나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에 기초해서 이와 관련된 지역의 주민조직들, 환경관련 단체들, 재활용관련 비영리조직들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결속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그러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변 활동과 더불어 단순히 그것의 실행을 지방정부에게 위임하는 것

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대안적 실행의 주체로 지역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이들이 실행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조직의 통제권을 우리는 사회적 소유라고 일컬으며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주의는 이를 통해서 실천된다. 이들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과 그것에 동의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폭넓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이들의 활동이 정부정책과 시장에 대한 개입의 여지를 넓히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정당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그들의 존재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지역의 환경적 필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필요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혹은 먹거리 위기에 대한 해결 등의 다양한 지역의 필요에 적용될 수 있다.

협동의 새로운 전략, 사회적 경제운동

세상이 연대의 가치로만 굴러가지 않듯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탄탄하게 구축된 기존체제는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를 자본주의의 비사회성을 덜어낼 근본적인 수단으로 사고하는 경향에 대해 그것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조장되어 온 신자유주의에 의해 적당히 관리되어 결국은 그것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경제가 낭만적 호소나 규범만으로 실천되지 못함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협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레이들로 박사의 고뇌 어린 조언은 낭만적 호소나 규범으로 그치고 있지 않다. 차라리 현실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으며, 협동의 원리가 실현되는 필연적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은 단지 시장의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장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이는 더욱 강화될지도 모른다. 또한 정부의 위

탁사업에 길들여진 시민사회의 비영리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 자발적 생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회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존의 협동조합 조직들이 시장 경쟁의 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협동의 경제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채택할 수 있는 내부의 지향을 가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현재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19세기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가 자신들만의 매력적인 경제 방식을 개발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상실해 온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20세기 말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등장은 유럽 대륙 일부의 미담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그것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다만 그들의 활동이 사회적 담론으로 표현되고 있지 못하며, 잘 조직되어 사회적 경제 블록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의 가능성은 재활용 대안기업연합회나 지역사회의 학교급식네트워크, 비영리사회서비스기관,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통합조직, 지역화폐, 지역 마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자신들에게 적합한 경제활동 방식을 상실한 채 시장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던 협동조합운동과 대안의 실행 방안과 주체를 사상한 채 자율적 생성의 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정부 위임의 대변 활동으로 자신의 활동을 축소시켜버린 시민사회운동에게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한 참여경제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님을 말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 협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운동을 말하는 이유이다. 신자유주의의 비사회적인 시장경제에 대한 다른 선택지로서 사회적 경제는 충분히 대안적이다. [icoop](#)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이 글은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의 개념이나 취지를 다루지 않는다. 그런 원론적인 부분은 이미 여러 곳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할 이유가 없을 듯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현실에 대한 분석이다. ‘정세분석과 전망’, 과거의 사회운동에서 당연시되었던 과정이 지금은 너무 무시된다.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잘 하면 된다는 식이거나 자본주의 현실을 무시할 순 없으니 일단 적응하고 훗날을 도모하자는 식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다.

1. 사회적 경제를 논하는 우리의 삶은 사회적인가?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social)이란 말의 의미는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되는 공공성(the public)과 공통성(the common)을 가리킨다. 그러니 사회적인 것이 실현되려면 신뢰나 연대, 이를 통한 공유(joint/common ownership)가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이런 신뢰와 연대, 공유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미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가치기본법이 그런 방향을 의미할까? 아니면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같은 조직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고 있을까? 정부의존이나 자립지향이나, 비영리나 영리나, 이런 기준들이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좌표인가? 지금 우리 현실을 판단하려면 법의 제정이나 단체의 조직,

정부지원, 영리 외에 사회성의 방향을 잡을 좌표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은 ‘시민참여의 사다리’를 만들고 그 단계를 ‘조작→치유→정보제공→의견조사→달래기→공동협력→권한 위임→시민통제’라는 여덟 단계로 나눴다. 시민참여의 사다리는 동정자문 위원회와 같은 조작된 참여부터 시민이 직접 공공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민권력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었다. 이런 단계에 맞춰 시민들은 자신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성의 실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조합원의 수나 매출고, 출자금, 실무자의 수, 모임 횟수나 참여자 수, 공간 같은 것 외에 협동조합의 성공을 측정할 방법이 있을까? 시민참여의 사다리처럼 참여의 정도와 시민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개발되고 있을까? 아직은 이런 물음에 적합한 답을 찾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나 마을만들기 영역에서 퍼트남(R. Putnam)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이 유행했다. 그 말의 쓰임새에 비해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는 많지 않은데, 2006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보고서가 그나마 구체적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사회신뢰는 매우 낮고 개인적인 관계망이나 특수한 신뢰관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젊을수록 사회신뢰가 낮다. 더구나 사회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그나마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나 종교단체, 사이버공동체가 신뢰도를 높이고 관계를 만드는 곳이지만 이런 곳은 폐쇄된 공동체라는 문제를 가진다. 결론은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취약한 상태이고 축적의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6년 이후 한국사회는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사회신뢰도를 높여 왔을까? 2012년 12월에 대전광역시가 발표한 「2012 대전의 사회지표」보고서에 따르면, 이웃에 대한 신뢰감은 낮은 수준이고 남성(67.4%)과 60세 이상(68.0%), 중졸 이하에서 부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대전 시민의 절반 정도가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데, 참여단체는 계/친목모임(46.9%), 동창회(15.0%), 종교단체(14.3%) 등의 순이다. 참여단체를 통한 이익은 ‘여가를 즐길’ (50.8%), ‘종교적 만족’(14.3%), ‘얻은 이익이 없다’(12.1%), ‘위급한 상황이나 미래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10.1%), ‘직업 및 수입 등 생계활동에 도움이 된다’(5.5%)이다. 2011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사회지표를 봐도 비슷한 수준이다. 2011년 강남구민이 주로 활동하는 참여단체는 동창회/동창모임(45.2%), 친목회/친목계(31.3%), 종교단체(15.3%),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9.0%) 등의 순이다. 이 조사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사회신뢰도는 낮고 한국의 사회적인 관계망은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한 폐쇄적인 관계망이다. 여기서 사회성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사회적인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 폐쇄적인 관계망이 활성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위급한 상황이나 미래에 도움을 얻으리라 기대하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열 명 중 한 명인 곳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실현될까?

그리고 사회적 자본 개념이 보여주지 못하는 영역도 많다. 사회적 자본은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전제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제도나 문화를 만드는 정치의 역할을 사회 환경에 종속된 것으로 파악한다. 즉, 이미 신뢰관계가 발달한 곳에서 사회적 자본이 확산한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신뢰가 없었지만 정치활동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신뢰가 만들어지는 사회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퍼트남의 개념은 정적인 서구 시민사회에는 맞지만 한국처럼 속도가 빠르고 갈등이 잦은 곳에서는 잘 적용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신뢰도가 낮더라도 정치의 출현이 새로운 관계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고 갈등을 통해 서로 만나고 학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것이 바로 정치이다. 다소 갈등이 생기더라도 기존의 규범이나 제도를 흔들어서 새로운 출구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한국의 정치는 자기 자리를 지키

느라 정신이 없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떨어진다. 사면초가라는 말을 이런 경우에 써야 하지 않을까?

2011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OECD 국가의 복지 지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연대 측정 결과는 30개 회원국 중 25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자원봉사참여율, 자살률, 감옥 수감자 비율, 범죄 피해율로 측정해 본 결과는 한국사회가 타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지 않고 고립된 삶을 고수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연고에 얽매인 주체가 아니라 자율적이면서도 연합하는 주체가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드러내고 서로 연계할 장이 필요한데, 그런 장이 부족하고 취약하다. 김성운은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의 문제」(2013)라는 논문에서 사회적이라는 말 자체가 자본주의 내의 보완물이고 정부가 사회적 경제 담론을 주도하면서 제도적인 동형화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인 것 = 윤리적인 것 =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에 기초”한다고 비판하고 “현실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전혀 대칭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이나 사회적 경제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지나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당장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직거래 활성화,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홍보방안, 교섭력 강화, 우선구매제도 등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사회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다양한 사업들이 사회성을 담보하는 과정이겠지만, 한국사회의 여건상 그런 사회성이 경제적인 전략만을 통해 확보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논하는 사람들의 삶은 사회적인가? 협동조합들은 협동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외려 가부장적이고 전문가 중심의 조직문화가 협동조합을 동창회나 친목회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협동조합이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2. 협동조합은 현재의 시장질서를 넘어서 수 있는가?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설립 건수(885건)가 가장 많고, 경기도(419건), 광주시(248건), 부산시(183)의 순이다. 업종은 도·소매업(892건, 30.3%), 교육서비스업(344건, 11.7%), 농·어업(288건, 9.8%), 제조업(277건, 9.4%)의 순서로 비중이 높고,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설립되었다. 그리고 설립 시 출자금은 일반협동조합이 평균 1,893만 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평균 4,032만 원이며, 출자금 1,000만 원 이하 협동조합이 전체의 65.3%로 초기 출자금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 그림만 보면, 매우 낙관적이다. 하지만 그늘을 볼 수 있어야 전망할 수 있다. 1년 밖에 안 되었고 올해 정기총회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립의 기초를 다진 곳은 많지 않다. <서울신문> 2013년 11월 16일 자의 “협동조합 절반이 개점휴업”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3년 5월 기준으로 인가를 받은 1,209개의 협동조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747개 협동조합 중 341개(45.6%)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수를 합친다면 이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부산일보> 2013년 11월 15일 자의 “부산 협동조합 절반만 실제로 사업”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의 실태조사 결과 167개 협동조합 중 82.0%인 137개가 법인 등기를 마쳤고, 57.5%인 96개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설립 신고나 등기만 해놓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단지 그 수의 증가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활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법 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부분을 건드리려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2년도 30대 기업집단의 산업별 매출액 구성은 제조업 부문이 전체의 61%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12%), 금융·보험업(7%), 건설업(6%), 방송·통신·정

보(5%) 순의 비중이다. 그리고 30대 재벌그룹 중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4대 그룹의 고용 규모가 50%를 넘고 이들의 당기 순이익 비중이 80%에 이른다.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2012년의 1,220개에서 1,185개로 감소했으나 다각화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의 확산은 이런 경제적인 집중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자료를 보면 협동조합이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정말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의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농·어업이 절반을 넘는데, 재벌들은 이런 영역을 남겨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나 외식 및 급식사업 증가로 식자재 유통시장이 90조 원 대를 넘으면서 삼성이나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같은 재벌들과 매일유업, 삼양사, 사조와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곽정수의 『재벌들의 밥그릇』(홍익출판사, 2012년)을 보면, “CJ, 롯데, GS, 두산, 삼양사, 오리온, 매일유업, 농심, 남양유업, 빙그레, LG패션 등이 참여한 외식업은 일부 재벌이 먼저 진출한 분야에 다른 재벌들이 추가로 뛰어들 경우다. 여기에다가 와인 판매(LG, SK, 롯데, 신세계, 보광, 두산, 동원), 온라인 교육(SK, 삼성, KT, 이랜드), 차량 정비(SK), 사진관(SK), 소금 생산(CJ),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현대차), 막걸리(CJ, 롯데, 진로, 오리온), 골판지(롯데, 농심, 한화, 삼양식품, 오리온, 애경), 웨딩사업(SK), 먹는 샘물(LG, 하이트), 장례업(삼성), 콜택시 사업(동부), 학원 사업(대상) 등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한 사례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불거진 골목 상권 침해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런 상황이니 협동조합과 재벌들이 서로 부딪칠 일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새롭게 설립된 협동조합의 약 1/3이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재벌들의 주요사업은 제조업이지만 도·소매업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특성상 협동조합은 자영업자들과도 경쟁하거나 손을 잡아야 한다(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22.7%로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사실 도·소매업 분야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들일 것이다. 혼자 버티는 것에서 함께 버티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더 좋은 조건임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지속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2009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된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경제 및 소득 양극화에 따라 자영업 내에서의 소득 및 자산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업종으로 보면 자영업자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33.4%가 종사하고 있는데(2007년 기준), 이 부문에서 자영업자의 몰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임금노동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은 자영업 내의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고, 고령화나 자산 격차가 협동조합의 활동력이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영업의 지역 간 격차도 문제이다. 2012년 12월에 발간된 고용노동부의 「생계형 자영업 실태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151만 1,154개 사업체 중 무려 139만 6,743개 사업체가 자영업자이고, 이중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44.6%이다. 그리고 매출액은 소매업,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서비스업 모두 서울 및 수도권에서 높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 영세 자영업체의 비율도 수도권에 비하면 비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경우 영세 자영업체의 비율은 수도권이 20~40%이지만 농어촌지역의 비율은 60~80%에 달한다. 이런 수치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협동조합의 수가 서울시나 경기도에 가장 많은 건 단지 지방정부의 지원 때문일까? 영세 자영업자 비율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의 수도권 집중도가 자영업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협동조합들 역시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영세한 규모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의 해결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3년 12월에 발간된 여성가족부의 「2013년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여성 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주요 참여자가 경력단절여성, 빈곤여성, 농촌여성, 결혼이주여성 등이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교육(75%), 사회복지(61%), 간병가사(54.7%), 보육(55.4%) 등의 순으로 여성고용이 많은데, 이곳에서도 여성 집약적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의 확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경제의 사회성을 높이고 승자독식의 시장 질서를 바꿀까?

협동조합운동이 재벌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질서를 바꾸고 몰락하는 자영업자와 비슷한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처럼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무수한 자영업자들이 이미 반복했던 실패이다.

3. 협동조합운동의 전략은 무엇인가?

철학자 칸트는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에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규제적 이념(Regulative Idee)을 강조했다. 이런 규제적 이념이 있어야 현실이 이념을 잡아먹지 못하고 자아가 분열되지도 않는다. 지금의 협동조합운동에도 이런 규제적 이념이 필요한 것 같다. 칸트는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절에 영구평화를 규제적 이념으로 내세웠다. 협동조합운동은 어떤 규제적 이념을 지향해야 할까? 앞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은 19세기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나 8시간 노동제, 연금과 같은 노동조건을 보장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를 보는 눈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그물코, 2013년)을 보면, “선구자조합의 교육기금 적립은 조합의 명예로운 특징

이자 자기향상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을 보여주며, 협동운동의 명제는 “1. 이 인간적인 조합은 현실의 이익이 일치하는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2. 진정한 노동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우리들의 교환을 지배하는 원칙은 이기심이 아니라 정의다”라는 원칙에서 나왔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열망과 원칙이 가능할까?

그리고 리처드 세넷의 『투게더』(현암사, 2013년)를 보면, “이윤공유와 성과급을 제안한 오웬의 의도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증대시키고 동료들 사이의 연대감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제는 오웬의 의도를 따르는 기업에 ‘작업장workshop’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지만, 오웬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오웬이 그것을 작업장이라 부른 것은 에밀 뒤르케뎀처럼 공장은 더 원시적인 사회 조직의 형태이며 인간 문명에서의 퇴보 형태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노동을 파는 공장이 아니라 일을 하는 작업장, 그런 노동문화가 새로운 이념을 낳는 모태가 될 수 있다.

또한 『안창호 평전』(청포도, 2007년)을 보면 안창호도 ‘모범촌 계획’을 세우고 모범촌 구성원 각각이 마을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산 방법을 과학화·합리화하며 부락의 사업과 경영, 노력을 집단화하고(分工合作) 금융과 공동매매의 협동기관을 세우며 각자의 덕과 신용을 향상시키고 함께 안전하고 유쾌한 마을을 만들면 독립이 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 봤다. 이런 이념들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좌표가 될 수 있다.

자율적이면서도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들이 출현하고 그 주체들이 만나 공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운동이 조직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성이 강화된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한국사회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폐쇄적인 관계망을 열린 관계망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동창회나 친목모임이 자족적인 모임에서

지역사회의 시민공동체로 전환될 때 사회적인 신뢰도 높아지고 실제로 협동조합은 그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김현의 「열림과 넘나듦의 교량적 사회자본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성 연구」(2009년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공동체 내·외부를 연결하는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안성의 안성의료생협을 사례로 삼은 이 연구는 조합의 ‘개방성’과 사회적 지위, 경제여건, 이념을 따지지 않는 ‘연결성’, 면대면 관계가 가능한 ‘밀착성’, 활동과정을 통한 ‘지속성’이 교량적 사회 자본을 형성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헌신성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 가족적인 분위기와 친밀감이 실제로 사회적 신뢰를 증가시킨다고 분석한다.

이런 특성은 의료생협만이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부각될 수 있는 면이다. 협동조합 7원칙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협동조합은 개방성과 연결성, 밀착성,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이다.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이런 성격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연결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연대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더욱 더 강해진다. 그런 점에서 외부의 법률이나 제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운동 자체의 힘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의 이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근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들을 돕자는 ‘노란봉투’에 일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액수는 4억 원을 넘고 있다. 과연 협동조합운동이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조직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이 실제로 협동을 조직하고 있나? 이런 연대의 손길을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협동조합이 가진 협동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 즉 관료나 형식의 언어가 아닌 협동의 언어, 사람들의 굳어진 자의식을 깨고 함께함의 여유와 즐거움을 자극할 수 있는 시의 언어를 고민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연대는 하나의 중심을 만드는 전략이 아니다. 연대는 여러 개의 중심을 만들거나 중심을 만들지 않는 전략이다. 그런데 중심이 없다

는 것이 전략이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외려 중심이 없기에 서로가 서로를 ‘적절한 시기에’ 뒷받침하고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각자의 영역에서 비슷한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림살이를 지속시키는 방법이 사업이라면, 연대는 공유(公有)와 공유(共有)를 확장시키는 운동이다. 서로의 움직임이 치밀하게 얹힐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그 밀도가 함께 쓰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공유면적을 넓힐수록 사업의 힘도 강해진다.

이것은 당위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얘기이다. 자영업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강화되는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협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독점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협동의 힘은 다양한 관계망과 연대를 통해 강화될 것이고, 독점의 약화는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가능하다. 협동조합이 직접 정치조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내외부 관행과 절차가 중요하다. 즉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를 설득하고 내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사회적인 관계망을 확장시킬 방법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이 기업의 내용과 방법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만의 의사소통구조나 기획과 책임분담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플레차(Ramon Flecha)와 크루즈(Ignacio S. Cruz)는 “경제적인 성공을 위한 협력: 몬드라곤 사례(Cooperation for Economic Success: The Mondragon Case)”(《Analyse & Kritik》, 2011년)에서 협동조합의 민주주의가 경쟁력을 만들고 협동조합 간의 연대나 이익의 공유, 매우 평등한 봉급체계, 안정적인 고용구조 등이 협동조합의 차이를 만들고 확산시킨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노동인민금고나 인도주의적인 경영만이 아니라 공개적인 지적 토론과 풀뿌리민주주의가 있었기에 몬드라곤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유럽 협동조합운동의 승패를 분석한 바틸라니(Patrizia Battilani)와 쉬뢰터(Harm G. Schröter)는 “탈협동화와 그 문제점들(Demutualization and its Problems)”(Quaderni DSE Working Paper, 2011년)에서, 지난 20년 동안 ①조합원제도에 바탕을 둔 상호부조라는 전통적인 인센티브가 흐려질

경우(협동조합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때), ②정부가 탈협동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③미래의 전망을 발전시킬 방법에 관한 대안적인 견해가 전통적인 견해보다 더 매력적일 경우에 협동조합에서 탈협동화가 진행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바뎀라니와 쉬뢰터는 정부가 탈협동화를 가능케 하는 법률 등을 제정함으로써 여러 협동조합들(특히 보험과 관련된 협동조합들)이 탈협동화의 경향에 휘말렸다고 본다.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이 이런 경향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자신할 수는 없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뭔가 변화를 도모하려는 의지, 맥락을 읽는 눈이 중요한 시기이다. 자기 성찰과 혁신의 의지는 사회변화를 읽는 눈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이념에 접근할 수 있다. [icoop](#)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개발

김성기 (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1.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바야흐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 그것인데, 2014년에 들어서면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시대적 관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적 경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13년 기준, 약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게 되었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약 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정부는 향후 5년 이내에 사회적 기업 3,000개, 협동조합 1만 개가 활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화가 사회적 경제의 확장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동안의 시기를 사회적 경제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할 때, 중요발전 요인은 제도화와 중앙정부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충청남도, 성북구, 완주군 등 사회적 경제 정책을 핵심 의제로 설정한 지방정부도 등장하였다. 물론 사회혁신과 협동사회를 지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2014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가 모색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향후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어떤 목표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2007년에서 2013년의 시기를 한국 사회적 경제의 도입기라고 규정할 경우, 2014년 이후의 시기는 사회적 경제의 도약기로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약기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적 경제가 선택

해야 하는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 국가(중앙정부)인가? 민간인가? 지역인가? 각각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지만, 핵심 동력에 대한 선택은 필요하다. 필자는 그에 대한 선택을 사회적 경제의 본질적 속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필요에서 동기화되고 기업화 되는 모델이다. ‘동기’가 태동하는 주요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할 것인데, 바로 ‘지역사회’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적 경제의 도약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런 시각에서 2014년 새롭게 태동하는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막중하다.

이 글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개발의 의의와 모델을 설명하고, 그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2.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경제 운동과 내생적 경제 개발 관점

1)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경제 운동의 의미

현대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경제,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위로부터의 경제발전 전략은 더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필요와 문제를 지역의 역량에 기반을 두고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운동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국제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업 등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며, 사회 약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공급, 낙후된 또는 공동화된 지역사회의 재생 등에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직면한 국가와 지역이 만연한 현시점에서도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의 퀘벡 등에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실업률의

상승을 막아내고 있다. 바야흐로 사회적 경제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운동은 주민 참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협치적(協治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시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공유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경제 운동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전국적인 범위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도 많다.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경제 기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집합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여기서 지역사회(community)는 한정된 지리적 특성을 갖는 지역에서 공동의 이해나 정체성을 갖는 공동체이다.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영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생활협동조합에서 발전되고 태동한 여성 일자리 공동체인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s),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성장한 자활기업, 친환경 농산품을 공동으로 구매·이용하는 한국의 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한다(김성기 편, 2012 참조).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등장한 이용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등의 상당수가 지역을 거점으로 공동의 비즈니스 필요를 조직화하면서 활약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는 지역의 역량에 의해 경제, 생활, 복지, 문화, 환경 등의 과제를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사회이다. 공동체의 집합적 참여와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 운동에 거는 기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

¹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마을 기업의 개념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을 기업은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정의된다(김성기 편, 2012).

2) 사회적 경제를 통한 경제개발 전략으로서 내생적 경제 개발 관점²

오늘날 한국에 ‘지역사회’는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곤란하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농촌의 공동화는 심각한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업도시 유치 전략, 국제투자도시 전략, 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개발과 이주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경제개발 전략’이다. 이 관점의 신봉자들은 국가가 모든 종류의 지역개발에 책임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유일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전략에서 지방정부의 관계자, 주민,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위로부터의 방침과 자원 유입을 기다린다. 이러한 경제발전 전략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나 중앙 집권적인 사회에서 나타나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상당한 임의 추정이 동반된다. 중앙정부가 정책이나 재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하향식 경제 개발 전략은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특정 지역이 보유한 잠재력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관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외생적 발전 전략이다.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필수적인 자원, 특히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이다. 소위 후진국이라 불리는 많은 국가에서 대다수가 필사적으로 투자자들을 찾고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경향은 상당히 포착된다. 최근의 사례로 보자면, 인천광역시의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부투자의 유치에 의한 경제개발이 지역사회의 역량에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투기자본이 저임금, 세금 감면, 산업부지 제공 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탐욕적 이윤을 획득했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재앙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다. 지역의 남아 있는 유용한 자원이 투자자를 위한 골프장, 고급 호텔, 회

² 이 부분은 Karl Birkhölzer(2009)의 논문인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local economy development”를 참조하여 진술하고 있다.

의센터, 산업단지, 사무공간, 산업개발센터 등으로 소비된다. 누군가 우려하듯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가 머지않은 시기에 국제투기자본의 사유지가 될 수도 있다. 지역 경제개발에서 외부 투자의 유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는 하다. 그러나 만약 외생적 전략이 투기자본의 이윤을 위해 추진된다면, 지역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외부 투자자는 투자 동기가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미련을 두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외부 투자자 중심의 지역경제 개발 전략은 매우 위험부담이 크다.

셋째, 내생적 경제 개발 전략이다. 하향식 개발 전략이 국가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고, 외생적 전략이 사적인 투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 관점에서는 지역 주민이 핵심 이해관계자이다. 자신의 지역과 가정을 떠나고 싶지 않거나 떠날 수 없다면, 혹은 국가나 시장이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의 자생적 발전 전략이 유력한 선택지이다. 내생적 발전 전략은 “유용한 모든 자원은 지역사회 안에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지역자원과 주민의 역량에 기반을 둔 경제 발전 방안이다. 완주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이다. 이러한 시도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사회적 경제를 통한 경제 개발 발전은 내생적 경제 개발 전략이다.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동력이 사회적 경제 운동인 것이다.

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모델³

사회적 경제 운동의 목적은 인간 중심의 호혜적 경제를 세우는 것이다.

³ 이 절의 내용은 Karl Birkhöler(2009)의 위 논문을 참고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가 주류이다.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명과 목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 경제 개발의 새로운 주동력으로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 길로 갈 것인지는 숙제이다. 이 절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지역 개발 모델에 대해 제시한다.

1)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의 목표

- | | |
|------------------|-----------------|
| ● 공공의 이익 추구 | ● 지역 순환 경제의 재생 |
| ●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 | ● 사회자본의 조성 및 축적 |
| ● 충족되지 못한 필요의 충족 | ● 지역사회 중심의 개발 |

* 주: Karl Birkhölzer(2009)가 제시한 내생적 지역 개발의 기본 원칙

■ 공공의 이익 추구: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의 목적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가 지역사회의 주민, 지자체, 자원활동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이해관계자(예, 투자자)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는 지속될 수 없다.

■ ‘경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 ‘경제’를 단순히 ‘돈벌이’로 수용한다면, 지역의 주민과 자원은 활용의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서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사회·문화적 활동 등의 재생산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 경제는 생산과 재생산이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무시한다면, 결국 그 지역사회는 붕괴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주민의 참여는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은 쓸모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 충족되지 못한 필요의 충족: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최대의 이

윤 창출을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공급 중심의 접근법으로 진행된다. 전통적인 경제적 사고에서는 수요를 동등한 구매력을 수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전혀 없거나 매우 희박한 재화는 시장 경제에서 버려지거나 제거된다. 이런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력이 낮은 지방 정부는 똑같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세금 등 공적재원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잔인한 악순환의 고리이다.

경제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사회적 경제는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수요 중심의 접근법에 집중한다. 역설적이게도 지역사회에서 잠재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은 지역사회 내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에 숨겨져 있다.

■ 지역 순환 경제의 재생: 경제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적 접근은 지역순환 경제의 재생과 연결된다. 지역사회 중심의 경제 활동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그 주민은 지역사회 내에서 소비하게 된다. 지역 생산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그 예이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략도 지역 순환 경제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관광 등 서비스업을 융·복합시키는 경제개발 전략은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다차원적으로 상품화하고, 생산된 상품의 상당 부분을 지역 내에서 유통·소비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 순환 경제의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순환 경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자본의 축적: 사회적 경제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핵심은 ‘지역사회’에 있다. 지역의 인구 규모, 주민의 지식, 능력, 경험 등이 신뢰로 결합되고, 다양한 관계망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역량’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신뢰의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사회적 경제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자본’이자 사회적 경제가 축적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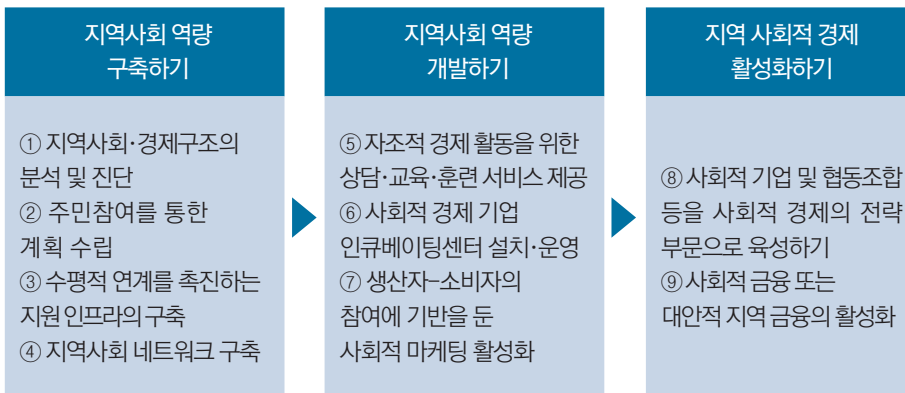
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사회적 경제 운동의 핵심 과업이 되어야 한다. 해체된 공동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학습’ 이외에 유일한 방법은 없는 것 같다.

■ 마을, 즉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경제의 유력한 자본은 사회자본이다. 금융자본이나 기반 시설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의 조성 없이 지역 경제 개발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마을 공동체 육성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내생적)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2) 사회적 경제의 지역 개발 모델

여기서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의 지역 개발 모델은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Group Local Economy in Berlin’이 개발한 이상형이다. 이 모델은 ‘지역사회 역량 구축하기’, ‘지역사회 역량 개발하기’,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기’ 등 3단계로 구성되며, 총 9개의 과제를 포함한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개발 모델



* 주: Karl Birkhölzer(2009)의 내용을 재구성

■ 지역사회 역량 구축하기(community building)

① 지역사회·경제구조의 분석 및 진단: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필요를 주민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에 ‘유용한 자원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과정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경기도 시흥시와 화성시의 ‘사회적 경제 자원 조사’에서는 관할 행정구의 동과 권역별로 지역의 수요와 자원 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다.

②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협치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제 과정에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정책의 수립 과정에 주민의 창발적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1,000인 회의’ 등과 같은 대중적 참여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참여형 계획 수립은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 더욱더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수평적 연계를 촉진하는 허브의 구축: 주민을 지역 경제 개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의 공간이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 공장, 공공장소 등을 ‘사회적 경제 허브’로 조성하여, 주민이 교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 공간에서 협동과 혁신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많은 모범을 창출하고 있는 ‘완주군의 지역순환경제센터’가 그 예이다.

④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사회적 경제와 동행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자본을 조성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것은 생산자 혹은 사업자 협동조합의 개발과 연결된다.), 사회적 경제 기업 상호 간 거래, 사회적 경

제 기업의 공동 협동기금 조성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한 기초 토대는 네트워크이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정보의 교환과 활동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자원을 융합하고, 상호 간의 유용한 역량과 서비스를 교환시키면서 시너지를 발휘한다.

■ 지역사회 역량 개발하기(community development)

⑤ 자조적 경제 활동을 위한 상담·교육·훈련 서비스의 제공: 농촌의 주민이나 빈곤층의 경우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익숙하다. 명백한 것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처럼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기업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기업 경영은 생소한 영역이다. 무지는 포기과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가적 마인드와 경영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⑥ 사회적 경제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의 설치·운영: 정책 관계자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발굴에 대해 조급하다. 이런 영향은 당사자에게 미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3,0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사업자 등록을 마친 곳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상당수 협동조합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않고 설립되었고, 사업을 위한 자금, 기술, 인적 자원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출발은 미션의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고 볼 때, 영국의 사회적 기업 전문 지원 조직인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이 사회적 기업 하나를 발굴하는 데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⑦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에 기반을 둔 사회적 마케팅 활성화: 지불 능력이 낮은 주민(고객)이 존재하고, 경기 침체를 겪는 지역사회는 시장을 형성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

취되기 힘들고, 수익성도 낮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마케팅 전략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생협이 좋은 성공사례이다. 생협은 유기농 생산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에 기반을 사회적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숙제이다.

■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기(promoting community economy)

⑧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의 전략 부문으로 육성하기: 협동조합기본법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에 포함될 수 있는 부문은 확장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 사회적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가 화두이다. 과연 모두가 기대하는 공동체와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의 집합적 이해관계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제도화는 확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바람직한 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회적 경제가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사명을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볼로냐(인구 약 40만 명)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대부분의 고용, 복지 서비스의 공급은 약 100여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⑨ 사회적 금융 또는 대안적 지역 금융의 활성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본 조달이다. 대다수 사회적 경제 기업은 규모가 20인 이내의 소규모 기업인데,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본 조달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한 정책 금융

연계사업이나 모태펀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멀리 있다.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사업은 사회적 금융의 좋은 본보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친화적 금융이 많은 지역사회에 확장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방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4.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대한 제언

한국 사회적 경제는 이제 초기 단계를 넘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공공성은 동반 성장의 관계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이 사회적 경제와 연계되고, 사회적 경제와 우호적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상호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지역 중심성이 중요하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2014년에 새로이 출범할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내생적 경제 개발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의 실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차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해 제시한다.

첫째, 지역 자원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강점을 잘 살리는 정책 전략이 중요하다. 유럽연합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①먹을거리와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 ②에너지, 교통, 물 공급,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된 지역에 분산되는 소규모의 기술 시스템, ③모든 분야의 근린서비스, ④지역 문화 활동과 문화유산, ⑤여가와 오락 서비스, ⑥환경 보호, 보존, 개선, ⑦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등이다.⁴

둘째, 사회적 경제 지표에 입각한 육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

4 Karl Birkhölzer(2009) 재인용.

적 경제 지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어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등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지 주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표는 사회정책의 성과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대주민에게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경제의 지역 경제 기여도(GRDP 기여도), 고용률, 기업 수, 사회서비스 공급률, 사회자본, 자원 순환 규모 등 다양한 영역의 지표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런 지표가 사회적 경제 정책의 목표로 제시되는 사회적경제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선 6기에,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는 지방정부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산업 정책 및 사회정책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고용과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었다. 명백하게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6차 농업 개발 사업,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등의 산업정책과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의 사회정책은 사회적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캐나다의 경우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개발·육성은 협동조합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실행하고 있다.

끝으로 민선 6기에는 지방정부 간의 공동 협업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2013년 출범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연대협의회’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이다. 최근 사회책임조달제도의 확산과 지방정부 상호 간 벤치마킹 사업을 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경제’적 속성이 있으므로 규모화와 네트워크는 그의 발전에 중요한 원심력으로 작용한다. 지자체 간의 공동 사업모델 개발, 사회책임조달시장의 개발과 교류, 공동의 사회적 금융의 조성, 사회적 경제 리더의 육성 등 자기 지방정부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경우 사회적 경제의 공동협업사업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의 자마니 교수

가 언급했듯이(송성호 역, 2012), ‘사회적 경제 운동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지역의 강점과 인적, 물적 자원이 사회적 경제의 상상력을 위한 원천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icoop](#)

〈참고문헌〉

김성기 편(2012).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기업』. 아르케.

Stefano Zamagni and Vera Zamagni(2009). *La cooperazione: tra mercato e democrazia economica*. 송성호 역(2012).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

Karl Birkhölzer(2009).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local economy development. *2nd EM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EMES.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1. 들어가며

바야흐로 사회적 경제가 봄을 맞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주요한 지자체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수가 급증하는 등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 정치권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2014년 2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가 우리의 헌법정신이라며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에 화답하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시장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가칭)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특별위원회격의 조직이 구성되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의 유승민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냐”는 질문이 아직도 간간히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기태(2014)가 말했듯이,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활동가들이 오래 애써 온 결과로 사회적 경제가 어느 날, 시민권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 사회적 경제계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유효한 수단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주체들에게는 사회적, 제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경제 기업¹들에게는 사업의 기회가, 활동가들에게는 실천의 환경이 주어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적 경제가 그동안의 성장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주요 이슈를 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

우리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뿌리를 멀게는 전통공동체의 두레나 계 등에서, 가깝게는 1960년대에 등장한 지역의 신탁운동 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모태가 된 IMF 이후의 실업극복운동과 자활사업 등도 사회적 경제의 뿌리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기반을 닦아왔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적 경제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민간의 노력과 함께 정부정책과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2007년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제도 기반으로서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의 한계가 서서히 노정되고,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

¹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용어는 사실 개념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을 통칭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일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특히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정책수행을 하면서 드러난 이슈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다.

1) 지원체계의 통합과 재편 필요성 대두

그동안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철저하게 중앙부처별로 수립된 제도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어 왔다.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등에 관한 제도와 정책프로그램이 소위 ‘주무부처’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왔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 기업은 안전행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별로 나누어진 제도에 근거해서 각각의 정책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실시했고, 지원체계도 사회적 경제 부문별 연계성이 미흡했다. 부처별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는 대체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강화, 소위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등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처별 칸막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 지원정책도 제각기 만들어지고, 정책 사업의 중복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 요소가 나타나게 되었다(표 1 참조). 김종걸(2014)의 지적처럼 같은 달인 7월에 있는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과 ‘사회적 기업의 날’(7월 1일)을 별도로 기념하는 상황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 부문 간의 분절적 상황을 드러내준다.

<표 1> 중앙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정책

고용 노동부	2차 사회적 기업 5개년 계획	①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	판로개척, 자금/투자지원, 공공구매 확대, 지원금 제도 개선
		②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컨설팅, 지원기관 역량강화, 사회적 기업가 확대양성, 사후지원
		③ 사회적 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사회적 기업 역할·책임성 강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공감대 확산
		④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민간기업의 지원/인적자원 연계 강화, 지역·업종 간 협력 확대
기획 재정부	협동조합 기본 계획	①시장참여 기회 확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 허용),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활 성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계 강화, 희망리본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위 탁기관으로 선정, 자활센터 등 사회적 협동조 합으로 전환 지원 등)
		②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금융자원 활 용(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을 포함, 비분할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 투자조합원제 도 도입,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육성)
		③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협동조합 참여자 교육확대(임직원별/창업단 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 사이버 교육 시스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검토),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협동조합 비즈니스 모 델 국제 공모전)
		④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정보인프라 구축(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 등), 지원기관/연합회 역할 제고(소상공인진흥 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연계, 소규모 연합회 난 립 방지 등 연합회 설립기준 개선), 네트워크 구축(기업 CSR 활용)

안전 행정부	2014 마을 기업 육성사업	①마을 기업 경쟁력 제고	마을 기업 설립 전 교육 의무화, 마을 기업 지정 과정 관리 강화(사업성 배점 상향조정, 중복성 검토 등)
		②마을기업다변화 사업모델 개발	지역특화모델 육성, 도농 간 기업육성 특성화, 판촉마케팅 확대
		③마을 기업 지원 체계 효율화	중간지원기관 운영방안 개선, 마을기업협회 활성화 지원
	현대적 지역 공동체 모델 추진 및 활성화 방안	①지역공동체 모델 및 활성화방안	지자체별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수립
		②지역공동체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지역별 여건을 고려, 기존 조직 활용 또는 신규 조직 설치
		③연구·성과공유, 법적 근거 마련	연구포럼 구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정비
보건 복지부	2014 자활사업 (자활기업 지원강화)	①자활기업 창업 자금 지원기간 확대	지원기간 6개월 → 1년 확대
		②자활기업 인정 요건 강화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 대상자 없는 자활기업 중앙/광역 관리
		③전국자활기업 지원 내용 구체화	자활근로사업단 전국자활기업 참여 허용, 사업비 지원 가능
국토부	국가도시 재생 기본방침	주민·지자체 도시 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 재생 주체로 육성하여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 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통해 계획수립· 사업컨설팅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 성과 도시재생대학 등주민교육 프로그램 전국 확대 운영

출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3)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문제는 이러한 분절적 정책수립과 집행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
업의 개념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사업수행 현장에서는 목적하는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소한 차이를 가질 뿐인데, 지원체계는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마을주민이 이웃주민들과 함께 마을에서 작은 사업을 ‘마을 기업’으로 시작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더 규합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 현재의 부문별 지원체계로는 사업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정책을 통한 지원을 개별적으로 받을 때마다 개별 부처 또는 기관이 요구하는 행정작업을 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게 된다.

더구나, 한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더 혁신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것인 양 포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사회적 경제의 부문 간 분절성을 더욱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자활기업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의 의존성을 자립과 자조라는 원칙으로 극복한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일각의 시각이 그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회적 경제 선진국에서 마을 기업(community business)은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중심의 사회적 기업으로 받아들여지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경제활동으로서 ‘사회적 사업(social business)’으로서 인식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시각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처별 제도에 기반한 칸막이식 접근은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연대와 협력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물론 그동안 부문별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성장해온 역사와 성장경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부문별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 정책은 보다 통합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이 근자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제도에 따라 강제된 구분을 넘어서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지역상황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부문별로 접근하던 방식을 버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지원 프로그램들을 묶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구성하거나, 사회적 경제 관련 ‘통합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체계 수립은 하나의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 활발히 일어남으로써 던져지는 다음 질문은, 바로 ‘통합’의 기준과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공감을 받는 접근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미션유형별’로 정책대상 단위를 구별하고, 지원정책도 이에 맞게 재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형 등 사업의 목적과 미션별로 정책대상 단위를 구별함으로써 더욱 입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사회적 경제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자원투입은 관련제도수립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향후 GRDP의 5~10% 수준으로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사회적경제발전5개년계획에서 2017년까지 공공구매의 3%를 사회적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혹자가 말하듯 우리 사회적 경제는 이제 어쩌면 ‘제도의 과잉(?)’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기쁘지만은 않다. 시장과 자본조성 등에 있어 생겨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자칫 소수의 조직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규모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소기업, 심지어 영세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도이고, 공동구매 시장 참여 등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면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은 가치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경영 공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큰 호응을 못 얻는 이유도 이런 점에 기인할 것이다.

당연히 사회적 가치 창출이 최우선 목적인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성상 일정 정도의 배려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배려기업’이라는 명칭으로 포괄하기에는 사회적 경제가 가진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도 결국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기혁신을 통해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량강화와 함께 언급해야 할 것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책의 적실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볼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감소와 생태계 조성을 통한 간접지원의 증가는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한 도덕적 해이 등 직접지원의 폐해에 대한 언급은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고, 필자 또한 직접적 지원이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간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합의나 분석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간접지원이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산을 축적하고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경우보다는, 일회성 사업위주로 편성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전체 사회적 경제 지원 예산 가운데 간접지원 예산은 30% 이상이지만,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예: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등)은 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나마 다른 지자체나 심지어 중앙정부에 비해 훨씬 정교한 간접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공유자산 구축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면, 공유자산 형성을 위한 간접지원책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자산’은 자산 활용(asset management) 방식의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내놓는 것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자본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기금 또는 지역개발은행 등의 설치나, 사회적 경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할 때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 착근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지역 순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3)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 시민적 기반의 확충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은 예전에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은 높지 않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들어봤다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체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적으로도 이는 아직도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경제 개념의 모호함이나,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정책 사업들의 영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경제활동’ 정도로 제한해서 설명되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들어 판다”는 설명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핵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효한 설명이었지만,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모두 담아내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사회적 경제를 국가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의제화하고, 해외의 사례처럼 사회적 경제가 ‘대안’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주류경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가장 쉽게 체감하고 공감하는 경우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생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어머니들이었다. 실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대의 등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회적 경제의 지향점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가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한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앞으로 사회적 경제의 시민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3. 맺으며

이상에서 최근 한국 사회적 경제에서 운위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가치개념의 규정, 사회적 가치의 평가, 협동조합의 경우 자조·자립의 원칙과 지원제도 활용 간의 상충문제, 성장기 사회적 경제 기업과 창업기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경쟁 문제 등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이슈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점을 유지하면서 더욱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거버넌스’의 강화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민-관’ 간의 거버넌스와 민간 간의 거버넌스, 즉 ‘민-민’ 거버넌스를 모두 말하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행정과 민간 간의 거버넌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경제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행정이 일정 정도 인정하고 수용했던 측면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이제 본격적인 도약을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적 경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거버넌스가 집행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폭과 깊이에서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의체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서울의 사회적 경제 조직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회적 경제 담당부서가 지속적으로 주요 사회적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협의해왔다. 이러한 민-관 거버넌스 구조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점차 구축되는 추세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영역별 협의체도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모임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주도한 국회의 ‘사회적 경제 연구포럼’ 등이다. 최근에는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서 사회적 경제 정책 실천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전국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manifesto) 실천협의회’도 구성되었다.

민-관 거버넌스와 함께 민간 부문, 조직, 영역 간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의 원리가 연대와 나눔, 협력과 상생이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경제계가 함께 발전하고 투입되는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시한 당사자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배후 기반인 시민사회 영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주체 간 역량 강화도 경쟁을 통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체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협동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사회에 전파시킬 수 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자신있게 “사회적 경제를 이끄는 우리는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민-관, 민-민 간의 협력을 통해 주체의 역량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oop](#)

사회적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때/곳: 2014년 2월 20일(목)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참석: 김재경 ((사)커뮤니티와 경제 상임이사)

양현준 (성북구사회적경제지원단 단장)

윤호중 (민주당 국회의원)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회/정리: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 생협평론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소개부터 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김재경(커뮤니티와 경제 상임이사, 이하 김재경): “커뮤니티와 경제”라는 사단법인은 대구와 경북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두 개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고 있어 최대한 이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이렇게 세 센터를 산하에 두고 있는데 현재 스무명 정도의 청년들이 여기에 투신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정체성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구가 되자”이고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를 잘 엮어내어 지역 전체가 자립, 자활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시 한번 재구조화되는 방식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실천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 가능성을 키워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은 발로 뛰는 지역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가 큰 소비 도시이므로 경북에서 생산되는 것을 대구에서 소비하는 등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현준(성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하 양현준):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서울의 25개 구 중, 성북구가 좀 잘한다는 소문이 돌아 벤치마킹을 한다고 찾아오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저는 성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를 겸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중 13개 구가 서울시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를 성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위탁받아 실행하고 있고, 그 부설로 성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작년부터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사회적 경제하면, 사회적 기업을 주로 떠올렸죠.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고, 성북구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25개 정도인데 협동조합은 40개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신협이나 생협 이외에 신생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마을 생태계 복원사업이나 공동체 복원사업 등을 진행하는 마을 기업도 생겨나고 있고요. 이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취지에서 지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시 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존과 성장에 착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에서 간접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지원이 지속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그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치 않냐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 경제, 공유 경제라는 화두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개별조직이 자기 이익만을 취하기보다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의 상호거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통계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제도 설계를 통해 GDP대비 사회적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경제를 만들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자: 포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웃음). 윤호중 의원께서는 사회적 경제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윤호중(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윤호중): 두 분에 비하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가 짧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이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 당 내에 기구가 만들어 지면서 신계륜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 정부 때부터, 하나하나 개척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00년에 자활사업을 시작했고 17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만들면서 자활과 사회적 기업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지요. 지난 2011년 말에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에 맞추어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드는데 나름의 기여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지난 5년간은 저희가 여당이 아니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과 연결된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생기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지방자치 차원으로 증폭시키며 나가지 않았나 싶네요. 최근 들어 여야 각 당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높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공약을 내놓기도 했고요.

사회자: 이이재 의원의 말씀은 오시는 대로 들도록 하고요, 오늘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점은, 여기 오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사회적 경제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의 폭이 넓어서 어떤 분은 대안 경제의 중요한 원리, 경제 시스템으로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2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취약계층이 더 잘살 수 있게 만드는 경제 운동이 아니겠냐고도 해석합니다만.

윤호중: 전문가들이시니까 먼저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웃음). 원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핵심은 사회적 가치

를 추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경제를 대안인지 보완인지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크게 봤을 때, 시장 경제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완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보완해 주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장 경제가 굴러가고 있다면,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인 이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키워가는 것을 더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또 거기에 추가한다면 각종 복지법인, 더 나아가 NPO처럼 비영리활동이 목적인 사업체까지, 의미를 더 확장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광의의 사회적 경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재경: 저는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결합시킨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강의할 때 이야기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회 자본을 매개로 삼는 경제활동이라고도 말씀드리고요. 사실 경제 활동에는 화폐로 통용되는 경제도 있고, 저변에는 꼭 돈으로 거래하지 않더라도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를 포괄적으로 사회적 경제로 이해하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징은 기업 운영의 목적이 영리사업을 하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구성원의 자발성을 전제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현준: 윤호중 의원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한편으론 골목상권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까지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불분명한 형태의 경제 부문이 될 것 같아 일정 부분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가 아직 대안 경제라고 할 수준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경제 규모가 얼마

인지도 잘 모르고요. 아마 GDP 기준으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일 겁니다.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큰 과제로 있고 이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또 저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익과 사회 이익 사이에서 사회 이익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게 사회적 경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증 사회적 기업이 한 예로, 배당을 3분의 1 이상 못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각오로 기업을 운영하는 곳을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모델로 생각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만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하고자 하는 혁신 가치를 담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이런 덩어리들이 다 모여져서 경제 흐름이 사회 이익 중심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현 단계에서 당분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 확장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이재 의원님이 불가피하게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곧장 이 주제로 말씀을 듣기로 하지요.

이이재(새누리당 의원, 이하 이이재):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에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추동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경제 영역을 보수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사회적 경제가 형성된 배경에는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에 사회적 경제가 매우 중요했다



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지요. 노동조합운동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급격한 혁명을 피하는 보완적 역할을 했듯이 대자본과 소자본의 관계 속에서도 소자본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매우 깊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사회적 경제가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여러 주체들이 법 제도 안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잘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점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각 부처의 고유사업처럼 진행이 되어서 이미 부처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부처들 사이의 칸막이를 해체하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통합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방법론으로서 먼저 통합 추진 체계. 즉, 분산되어 있는 추진 체계를 어떻게 통합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 두 번째로 미비한 금융 지원 문제. 또, 시장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협동조합인 경우엔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자생력을 지니는 수익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서 이런 기반을 유기적으로 결합,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사회자: 통합 생태계 구축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공통적인 점이 경제와 더불어 사회 가치, 사회가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면 경제 가치 이외에 사회 가치가 실현되는 다중 효과를 나타낼 텐데요, 사회적 경제가 활발한 지역 사회의 모습이랄까, 또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실천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김재경: 성북구가 정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 는 혁신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에선 청년들을 통해서 혁신적인 모델이 많이 나오는데 지방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은 삶을 살기 좋은 곳으로 공동체화 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얼마나 상호 부조와 연결망을 통해서 풀 수 있을까, 연결망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사회 자본인 것이고 내가 사는 터에서 먹고 살면서 놓고 비빌 언덕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에는 작년에 전국최우수상을 받은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안심 지역이라는 곳에서 지역민들이 조합원 328가구를 모아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 대구 인근 소농들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하는 판을 협동조합에서 만든 거예요. 생산자는 계약 재배로 안정 소득을,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인근에서 구한다는 식으로, 대구 안심지역은 탄광 지역이었고, 다소 경제가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주민들이 모여 일을 내기 시작한 거지요. 로컬푸드 매장을 매개로 소비자교육도 하고 매장 옆에 ‘땅 이야기’라는 카페를 만들고, 그 옆에는 반찬 가게, 최근에는 청년 대동계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스무 개 단체가 유기적으로 내부거래를 하게 되니 무슨 일이 터지면 사람들이 적절하게 어울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 된 거예요. 최근에도 ‘땅 이야기’에서 엄마들이 장보는 중에 아이들끼리 공을 차고 놀다가 인근 횃집의 어항을 깨버린 일이 있었어요. 횃집의 물고기가 짹 튀어나왔잖아요! 그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회를 먹는 동네잔치가 벌어진 거죠. 거기서 지역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 단위에서 주거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터로 인식하고, 동시에 이웃을 내 삶에서 굉장히 좋은 조력자로 만드는 거죠. 큰 이익을 받지 않더라도 들릴 곳도, 놀 곳도, 의지할 곳도 많은, 그런 지역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대구시 여덟 개 구마다 이렇게 엮는, 사람중심의 클러스터, 사회적 경제 블록을 만들자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현준: 성북구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민민 네트워크가 잘되는 편이에요.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가 있고 마을 기업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민간융합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맞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인적 구성의 풀을 만들고 민관 파트너십도 정책을 중심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접촉점이 없으면 우리들만의 사회적 경제로 머물고 지역에 파급효과를 끼치지 못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사회적 경제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내부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에서는 지금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한쪽만 알던 자원을 연계,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복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고요, 지역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접촉점이 넓어지는 것이 성북구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을 보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은데, 실천 현장에서는 이를 뛰어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역으로 만들까 하는 화두로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중: 앞서 두 분의 말씀을 듣다보니 굉장히 모범적인 지역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고무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몬드라곤이나 퀘벡 주처럼 협동조합과 사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회적 경제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지역들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경제가 시장 경제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큰 곳의 지역 소득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게 나오는 걸 보면 사회적 경제가 안정성을 잘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혁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경제는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지역 안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자꾸 발굴하고 네트워크로 묶고, 사람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인데, 하다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나 저소득층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농업·생산·자조합·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이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정부에서 풀지 못하는 전·월세 문제도 중국에는 지역사회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활동가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이재: 윤호중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멈출 줄 모르는 탐욕에 대한 보완 의제로서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자본주의,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압축 성장이 아니었다면 사회적 경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까. 과거 지방에는 양복점, 양장점 같은 가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기업 브랜드에게 점령되고 다 사라졌잖아요. 협동과 연대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한다면 개인 미용실들도 연대를 통해 공동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사회적 경제는 이와 같이 대자본과 거대한 시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잖아요. FTA라든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속에서 글로벌에 대칭되는 로컬이 사회적 경제에 적합해서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성 회복에 사회

적 경제가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활기업처럼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은 정부의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협동조합처럼 시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경우에는 수익 모델 창출에 대한 냉철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운영하게 되면 외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끊어질 때 스스로 소멸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수익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안목과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비온 후 대나무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발 다 성공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관건은 각 주체들마다 생존과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에 교육과 지도자 육성이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호중: 저는 협동조합 7원칙 중에서 제6, 7원칙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6원칙은 상부상조하라는 것이고 7원칙은 지역사회와 결합하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예산에 매달리다 보면 수직 계열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복지 지출에 30조 정도의 예산이 쓰이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10% 정도예요. 이 중 사



윤호중 (민주당 국회의원)

회적 경제 지원 예산은 1,000억~2,000억 원, 자활기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없이 지방정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4,500~5,000억 원 정도고요, 마을 기업도 300~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7,000~8,000억 원 정도인데 사회적 경제가 복지 서비스 분야로 영역을 넓히게 되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자활기업은 복지부가, 하는 식의 칸막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서로 돕고 얹혀서 어떤 시장의 파도가 밀어닥치더라도 우리끼리 살아남자는 강한 연대의식을 지니는 활동가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공공 조달이나 복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예를 들면 많은 복지 법인들이 있는데 아주 불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도 사회적 경제를 확대할 수 있는 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도 측면에서 지원한다면 서로 돕고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나 발판을 만들어주어 사회적 경제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 부문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계속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이재: 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장 밑에서 거의 통합적으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거죠. 그런데 지역 주민 스스로가 사회 가치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활동가나 지도자가 생겨나야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정당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야당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새누리당에서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민주당에서는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그

필요성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잘 아는 이들을, 정치권에서 모르는 이들보다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는 그리 되리라 봅니다. 정당과 지자체에서는 사람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사회자: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던데요, 정당이나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실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이재: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고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되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런 부분에서 업적을 넘어 치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에게 많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 차원에서, 특위에서도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경: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잘 살아남아야 할 것 같고,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지원 종료 후, 구조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잘 생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최근에 거버넌스를 중시하고 지역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교육 분야 일을 할 때 협동조합 교육이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은 교육청에서 문호를 개방해 주어야 하는데, 굉장히 부담해요. 판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에서라



김재경 ((사)커뮤니티와 경제 상임이사)

도 시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지만 장벽이 높더라고요. 한편,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최근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느낀 점인데, 시대적 당위성으로 대자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협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연합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나 협업에 대한 훈련, 타인에 대한 신뢰가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이재 의원님이 아주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방에서는 깔대기 모형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앙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지역에서 이들을 한 깔대기 안으로 담아 지역의 자원조사를 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이들이 찾아서 적재적소에서 가져가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 사업이든, 마을 기업 사업이든 상관없이 지역사업으로 보고 중앙예산을 통으로 가져와서 배분하는 방식이죠.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통합하는 게나 과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행정을 일원화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계획이나 정책은 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영업도 자리 잡으려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정책 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보완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지나친 수치나 성과 위주 정책은 방향을 틀어 주는 게 정치가 해야 할 몫 같습니다. 수치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자금 융통 문제는 여전히 미개척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정책 입안 시 고민하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이재: 아직 우리가 협동의 이점에 대해 성공 사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역 재래시장에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통해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사례 등 다양한 모델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이나 시설 현대화 등, 영업 방식은 그대로 두고 하드웨어만 바꾸는 식이거든요. 『상록수』의 주인공처럼 지방에 가서 헌신하며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민이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김재경: 저도 공감합니다. 공익에 도움이 되면서 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공 모델이 사회적 경제에서 나와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겠죠.

사회자: 재래시장 경우에는 중국제일시장의 사례도 이미 주목을 받고 있고, 2~3년 지나면 여기저기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들이 등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가 동시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불씨처럼 확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좌담회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속에서 중요시하는 사회적 경제의 키워드, 또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의 화두가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양현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환영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도 설계를 잘 해서 사회적 경제 규모를 통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거래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일하는 기업은 인쇄·출판·광고 제작을 하는데 18명 직원 중 1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는 위계질서가 있는데 우리 기업의 가치는 의사소통에서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직원이 최고경영자에게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등의 요소를 가미했는데, 제가 마음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화두는 평등, 소통의 장애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재경: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성세대로서 청년세대의 환경이 암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청

년세대, 후세대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가 저의 화두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훈련된 청년들이 대구 경북의 여러 지역에서 일하고 뿌리내리는 꿈과 희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평등, 지역공동체, 청년 이런 화두가 나왔는데 두 분 정치인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이재: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통합추진체계, 공공지원, 공동조달, 평가체계가 들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체제로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사회적가치기본법을 발의했는데 투명하고 사회 가치를 충족하는 사업을 하는지를 점수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지요. 경쟁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재정 효율화도 꾀하는 등 이점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를 ‘착한 경제’, ‘똑똑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자활기업은 사회적 경제 방식을 통해서 똑똑한 복지를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우리 경제를 보다 선한 방향으로 이행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호중: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의 키워드는 공공성(公共性)입니다. 저는 자생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사회적 경제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작년에 『한국경제 3.0 시대로 가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공공이 함께 하는 경제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공공’이 한자로는 두루 공(公), 함께 공(共)을 쓰는데 영어로



public과 common이 같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보수의 것이냐, 진보의 것이냐는 게 아니라 한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밑바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화두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국의 보수당은 ‘큰 사회(Big Society)’를 들고 나오는데 한국의 보수는 하는 게 없다는 말을 제가 해왔는데, 이제 그 말은 좀 아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웃음).

이이재: 아이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웃음).

사회자: 영국에서는 공공 조달이란 말도 사회 조달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더군요.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해 실천현장과 정치, 그리고 여야의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icoop](#)

미디어 공공성

이슈

- 몬드라곤 파고르의 실패
- 미디어 공공성 현황과 그 회복 가능성

몬드라곤 파고르의 실패

이시즈카 히데오 (협동총합연구소 생명과 생활 주임연구원)

1. 몬드라곤의 가치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본거지를 둔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MCC 또는 CM)는 노동자협동조합 형식을 핵심으로 각종 협동조합과 그 자회사로 형성된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사회적 경제 기업 그룹이다(표1 참조). 공업 분야, 유통 분야, 금융 분야, 교육 분야의 4개 축이 협동하고 연대하며, 경제민주주의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그 이념은 1991년에 제정된 몬드라곤 원칙에 나타나 있다. 역사적으로는 창설자 아리스멘디아리에타(José María Arizmendiarieta)가 1941년부터 몬드라곤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 활동을 준비기간으로 해서 기술학교를 만든 것이 그 시작이었다. 1956년에 이들 청년 중 일부가 최초의 공업협동조합인 울고르(ULGOR)를 설립했다. 이 울고르는 파고르 가전이 되었다. 따라서 파고르 가전 성공의 역사는 1956년에 시작, 2013년에 좌절을 맞이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몬드라곤그룹은 이번 파고르 가전의 도산으로 하나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으나 몬드라곤그룹 자체가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실패로 인해 몬드라곤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몬드라곤을 이상화하거나 신화화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또한 반대로 몬드라곤협동조합운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들은 협동조합운동의 가치나 원칙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 파고르 가전그룹이 파산신청을 선택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만한 자료가 적고 불분명하다. 외부적으로는 바스크 정부도 파고르 가전

그룹의 파산을 바라지 않고 자금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몬드라곤그룹 자체도 한계에 이를 때까지 그 존속을 위해 대응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다. 논점으로는 ①자금 조달 문제, ②마케팅 전략 문제, ③경영진의 판단 문제, ④협동조합기업의 구조적 문제, ⑤협동조합노동과 지역 고용 문제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표1>몬드라곤그룹의 개요(2012년, 전년대비) (단위 : 백 만 유로)

항목				
총자산	35,887 (+10.6%)			
사업규모 (산업부문·유통부문)	12,903 (-7.6%)	수출 4,004		
기업 수	289개	협동조합 110	자회사 179	
협동조합	110개			
자회사	179개			
종업원 수 (비율은 표시한 대로)	80,321명	바스크 주 42% (33,734)	그 외 스페인 40%(32,128)	외국 17% (13,655)
공업 부문	36,963명	파고르 외	약100개 협동조합	조합원 비율 86%
중, 연구개발 부문	2,096명	15개 센터		
유통 부문	39,839명	에로스키생협 외		
금융 부문	2,486명	CAJA LABORAL은 행, LAGUN-ARO 공제조합 등		
교육 부문	1,033명	몬드라곤 대학 외	학생 수 11,248명	
투자 총액	331			
조합원 출자금	1,838			

출처 : informe annual 2012, CM 참고하여 작성

<표2> 몬드라곤 산업 부문 (단위: 백만 유로)

	2011	2012
매출액	5,929	5,812
중, 수출액	3,973	4,004
투자	335	307

출처 : Informe annual 2012, CM

2. 파고르 가전의 도산과 가전 시장

몬드라곤그룹의 중심적 존재였던 파고르 가전이 2013년 10월에 도산하고 Gipuzkoa 지역의 상업재판소에 의해 채권자 사전협약에 들어갔다. 파고르 가전이 지금까지의 형태로 존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파고르 가전은 바스크 자치주 국내 총생산의 3.2%, 공업생산의 7.4%, 고용의 3.5%, 공업 분야 고용의 8.4%, 바스크 주의 수출 12.2%, 몬드라곤그룹 매출액의 8.1%, 종업원 수의 5%를 차지하고 있다(Dossier CM, 2013). 파고르 가전은 스페인에서는 기업그룹으로서 제5위, 유럽의 가전제품 회사로서는 4위였다. 스페인 시장 점유율 17.7%, 프랑스 14%, 폴란드 7.9%였다.

파고르가전그룹은 파고르산업기계그룹(FAGOR ARRASATE, FAGOR EDERLAN, FAGOR ASSEMBLY, COPRECI 각 협동조합 등)과 파고르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파고르가전그룹은 몬드라곤그룹 속에서 인원의 약 5%, 매출액(산업·유통 부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번 파고르 사태는 가전 부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파고르 가전이 취급하는 제품으로는 이른바 가정용 전기 기기로 불리는 냉장고, 세탁기, 주방 기기, 소형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텔레비전, 음향·영상기기, 컴퓨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고르 가전이 도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파고르 가전의

이사장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스페인 및 유럽 가전 시장의 5년에 걸친 침체를 꼽는데(몬드라곤기관지 TU Lankide 2013년 10/11월호), 이것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8년 리만쇼크 이후,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재정위기와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스페인 가전시장 전체가 2007년부터 2012년에 걸쳐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스페인가전제조업협회 ANFEL, 2013). 2007년 이후 불황 속에서 스페인 및 유럽 가전 시장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 중 하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한 것이다. 이것은 제품 가격 인하 경쟁을 발생시켰으며 가전 제품의 부가가치 저하, 노동비용의 상대적 상승 등의 문제를 유럽의 가전 제품 제조회사에 가져왔다. 유럽 가전시장에서 유럽 제조회사가 중심으로 부터 이동하고 있다. 스페인 가전제품 제조업의 매출이 축소하고 그 노동 인구가 축소, 제조회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외적 요인이 파고르 가전의 적자를 누적시켰다는 점을 사업보고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고르 가전은 그러한 불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을까. 파고르 가전은 살아남기 위해 몬드라곤그룹, 금융기관 및 바스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대처하려고 했다. 2012년 12월에 파고르 가전은 ‘2013~2016년 전략계획’을 만들고 총회에서 승인했다. 이 시점에 이미 적자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업확대 계획을 통해 발전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TU Lankide 2012년 6월호). 그것에 따르면 국제시장, 특히 앞으로 발전 전망이 있는 동유럽(특히 폴란드), 그리고 아시아 특히, 중국 기업인 HAIER와 공동으로 De Dietlich 브랜드를 파는 등, 중동 등을 중시한 생산을 확대하고 2016년까지 4년 동안, 해외시장에서 2억 유로를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페인 가전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생산 확대와 국제 협력이라는 적극적인 확대 방침을 채택했다. 그것은 세계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함께 협동조합다운 지속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또한 파고르 가전은 신규 제품 개발, 에콜로지를 생각한 제품

등을 중시해 왔다. 이것은 유럽 선진국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글로벌화와 제품 고도화라는 2개의 목표를 내세웠던 것이다.

<표3> 파고르 가전그룹 수지표 (단위 : 천 유로)

	2010	2011		2010	2011
고정자산	702,625	661,620	고정부채	496,355	378,604
유동자산	707,565	618,815	유동부채	687,199	746,844
			종속 출자금	106,434	106,434
자산 총액	1,410,190	1,300,435	부채 총액	1,410,190	1,300,435

출처 : Fagor Electrodomesticos, S.Coop, Cuentas Anuales 2011에 따라 작성

<표4> 파고르 가전그룹 매출액

연도	금액(백 만 유로)	전년대비	해외 판매 비율
2000	1,031	118.2%	438(40%)
2005	1,639	143%	893(54%)
2007	1,947	99.7%	1,227(63%)
2009	1,576	86.9%	1,087(69%)
2012	1,245	93.4%	946(76%)
2013 1/4분기	491		

출처 : MCC(CM)Informe Anuria 각 년도를 바탕으로 작성

<표5> 파고르 가전 그룹의 종업원 수(노동자조합원 수)

인원 수	2011	2010
직속 인원	3,511(2,219)	3,733(2,325)

간접 인원	3,130	4,527
전체 종업원 수	6,641	8,260

출처 : Fagor Electrodomesticos,S.Coop, Cuentas Anuales 2011

<표6> 파고르 가전그룹 수익 (단위:천 유로)

	2011	2010
협동조합 본사	-24,651	-3,860
Fagor Brandt (프랑스)	1,331	-3,806
Fagor Mastercook (폴란드)	223	-155
기업	-2,636	-2,049
합계	-25,733	-9,870

출처 : Fagor Electrodomesticos,S.Coop, Cuentas Anuales 2011

<표7> 파고르 가전그룹의 주요 브랜드

Fagor, Brandt, De Dietlich(세계 시장)
Aspes, Edesa(스페인 시장)
Sauter, Vedette, Thompson (프랑스 시장)
Ocean, SanGirogio (이탈리아 시장)
Mastercook(폴란드 시장)

출처 : Fagor Electrodomesticos, Informe 2004

<표8> 파고르 가전그룹의 주요 해외 자회사(2004)

명칭	소재지	취득년도	종업원 수
Extra Electromanager (주식회사)	모로코	1994	212

Worpmat (주식회사)	폴란드	1999	1,254
Gayser-Gastech S.A.(주식회사)	바스크 지방	1998	272
Brandt (주식회사)	프랑스	2001	4,644

출처 : Fagor Electrodomesticos, Informe 2004

가전시장 쇠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 글로벌화와 제품 고도화를 통해 도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파고르 가전이 도산하고 경쟁 상대인 다국적 기업은 도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경쟁 상대로는 Electrolux(스웨덴), BSH(독일), Whirlpool(미국), Merloni Electrodomestici(이탈리아) 등이 있으며 모두 자본주의기업(주식회사)으로 그들은 공장 폐쇄, 아시아 등으로 공장이전, 인원삭감 같은 방법으로 경영위기를 회피하고 있다. 예를 들면, Electrolux는 2007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많은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있다(표9 참조).

<표9> Electrolux의 공장 폐쇄

소재지	소재국	주요 품목	폐쇄년도
Torsvik	스웨덴	소형가전제품	2007
Neremberg	독일	세탁기, 식기세척기	2007
Adedaide	오스트레일리아	식기세척기	2007
Frederecia	덴마크	조리기구	2007
Adelaide	오스트레일리아	세탁기	2008
Spennymoor	영국	조리기구	2008
長沙 Changsha	중국	냉장고	2009
Scandicci	이탈리아	냉장고	2009

Sr. Petersburg	러시아	세탁기	2010
Motala	스웨덴	조리기구	2011
Webster City	미국	세탁기	2011
Alcala	스페인	세탁기	2011
L'Assomption	캐나다	조리기구	2013

출처 : Electrolux Anural Report 2012

<표10> 유럽 주요국의 가전제조업 규모(2012년)

	업체 수	고용 수	생산액(백만 유로)
독일	270	53,589	8,799
스페인	287	18,786	3,380
프랑스	165	14,470	2,704
이탈리아	602	55,274	11,439
폴란드	239	15,943	1,656
영국	398	18,209	3,278
유럽연합 27개국	3,422	237,300	36,900

출처 : Eurostat, enterprise manufacturing subsectors annual, 2012

<표11> 유럽 주요국의 산업 노동비용 (단위 : 유로(2011))¹

국명	/1시간	국명	/1시간
스페인	23.0	이탈리아	27.3
프랑스	36.6	폴란드	7.4

¹ 노동비용(Labor cost)이란 임금에 사회보장경비 등을 더한 것.

독일	35.4		
영국	23.3		

출처 : Eurostat

또한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가전제품 수입처는 중국 58%, 터키 16%, 한국 7%, 미국 3%(2007)이다(Dadacomex europa 유럽상업통계). 스페인 가전제품 매출 비율은 세탁기 27.5%, 조리대(조리 기구) 30.9%, 오븐 16.0%, 냉장고 14.5%, 식기 세척기 10.6%이다(2007)(ANFEL, 스페인가전연합회). 2007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스페인 가전시장 매출액은 56% 하락했다. 각 가전 제조회사는 인원 삭감, 공장 이전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파고르 가전은 그러한 방법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이다. 유럽 및 스페인의 경제 불황을 견뎌내고자 했던 협동조합기업이 갖는 내부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표12> 스페인 가전제품의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2000	2005	2007
수출	1129.2	1246.7	1128.8
수입	1299.6	1713.7	2000.8
수출-수입	-170.4	-467.8	-872.2
수출수입대비	88.9%	72.7%	56.4%

출처 : DataComex. Misitsterio de industria

<표13> 스페인 가전제품 수입국 (단위: 백만 유로, 금액대비 비율)

	2000	%	2007	%	2011	%
중국	114.3	8.8	489.7	24.5	474.0	34.2

독일	273.2	21.0	350.6	17.5	191.5	13.8
이탈리아	326.0	25.1	315.5	15.8	140.0	10.1
프랑스	167.0	12.8	163.1	8.2	76.5	5.5
터키	32.5	2.5	141.7	7.1	138.4	10.0
폴란드	1.7	0.1	97.8	4.9	99.7	7.2
한국	55.4	4.3	86.7	4.3	25.7	1.9
영국	76.7	5.9	52.2	2.6	25.2	1.8

출처 : Ministerio de Economia y Coonpetitividad. DataComex에 근거해서 작성

<표14> 스페인 국내 가전제품 제도대수 전년대비 증감률

	2003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냉장고	+11.36%	+7.87%	-14.75%	-11.30%	-11.19%	-11.58%	-20.49%	-11.17%
세탁기	+4.83%	+10.42%	-13.61%	-5.43%	-4.11%	-7.07%	-10.98%	-4.64%
건조기	+24.13%	+1.70%	-22.87%	-12.35%	+12.46%	-23.21%	-28.44%	-6.32%
식기 세척기	+8.72%	+3.27%	-12.11%	-16.51%	-1.22%	-10.94%	-12.25%	-8.87%
조리대	-6.65%	-9.90%	-17.51%	-19.30%	-31.09%	-7.04%	-31.88%	-17.91%
오븐	+3.30%	+2.01%	-16.59%	-20.00%	-3.14%	-12.95%	-14.05%	-3.49%
그 외	---	---	---	---	---	---	---	---
전체	+10.34%	+8.20%	-17.62%	-15.48%	-4.01%	-14.44%	-13.86%	-6.412%

출처 : ANFEL. Estadicas에 근거해서 작성

3. 파고르 가전의 도산 경위

도산에 이르기 직전까지 파고르 가전그룹은 경영위기를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2012년 12월 13일에 만들어진 파고르 가전그룹은 ‘2013~2016년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기업의 존속을 생각했다고 여겨진다(TU Lakide).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가전시장 불황에 맞서기 위해 외부 자금을 도입하고 신제품 개발에 힘을 쏟아 스페인 시장에서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해외 시장, 특히 아시아, 동유럽, 중동 시장을 겨냥한 생산증가라는 확대노선의 추구였다. 기술개발에 1억 8백만 유로를 2012년 4분기에 투자, 또한 중국 Haier와 폴란드에 각각 5천 5백만 유로, 5천 6백만 유로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계획에서는 2016년까지 2억 유로(2012년 1억 1천 7백만 유로)의 매출액을 올린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급전개가 일어난 것은 2013년 9월이다. 2013년 상반기 매출액이 예상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때까지 파고르 가전의 2013~2016년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하에서 간단하게 경과를 열거해 보면(TU Lankide 2013년 10~11월호에 근거한다),

2013년 5월 몬드라곤그룹 회의 7,000만 유로를 조합원재건고용기금(FRES)으로 파고르 가전에 융자 지원 결의.

2013년 9월 파고르 가전이 추가로 5,000만 유로 지원을 몬드라곤그룹에 요청.

2013년 10월 15일 몬드라곤그룹회의 만장일치로 5,000만 유로 지원을 부결. 이 융자로도 파고르 가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2013년 10월 16일 파고르 가전은 Gipuzkoa 지역 상업재판소에 사전채권자회의 절차를 신청, 4개월간의 채권자 절차 속에서 계획의 재검토와 재정 재건의 방안을 찾음.

2013년 10월 30일 몬드라곤그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약 3억 유로를 지원했고 그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고 발표.

2013년 10월 31일 폴란드 자회사 Mastercook의 채권자회의도 재판소에 요청. 파고르 가전과 EDESA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그러나 재판소는 수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외국에 소재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EU청산법과의 관계를 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1월 6일 프랑스 자회사 Fagor Brandt의 채권자 절차가 제시된다(이쪽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2013년 11월 13일 파고르 가전의 청산 절차 신청.

2013년 11월 24일 EDESA 청산 절차를 상업재판소에 신청.

2013년 12월 17일 관보(BOE) 고시. 파고르 가전과 EDESA의 Gipuzkoa 지역 상업재판소가 채권자회의(청산절차) 개시. 절차 관리인(관재인)으로 3개의 관제 사무소, EVE Administracion Concursal, SLP-Howarth Auditores, SLP-Consultores Sayma를 상업재판관이 지명하다. 스페인 청산법(Ley 22/2003)

4. 채권자회의의 향방

Gipuzkoa 지역 상업재판소에 의한 채권자회의에서는 우선 본체인 파고르 가전과 EDESA 채권자회의를 열고 각각 재무상황, 부채액, 채권자의 특정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파고르 가전의 자회사인 프랑스의 Fagor Brandt, 폴란드의 Mastercook 및 스페인 국내에 있는 Grumal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선 본체 협동조합의 재무상황을 확실히 한 후에 검토하게 되었다.²

또한 채권자 신청을 임의사전채권자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관보로 고시되었으나 채권자의 우선순위, 지불 가능성, 파고르 가전을 완전히 폐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존속시킬 것인지에 관해서도, 상업재판소의 채권자회의 경과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특히 채권자 중에는 바스크 정부, 몬드라곤 그룹, 민간 은행, 공급업자 등

2 필자는 EU내에서의 법적 절차 관계, 스페인 국내 절차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있으며 또한 파고르 가전과 EDESA의 노동자조합원의 출자금, 임의 적립금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도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출자금, 적립금이 돌아올지 어떨지를 파고르 가전 자신이 결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판단은 협동조합 자신의 손에서 벗어났다. 협동조합의 출자금, 조합원의 적립금은 ‘부차적 출자금’으로 불리며 노동자 조합원이 되찾을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전국재건평가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0월 시점에서는 몬드라곤 내부에서도 견해가 갈라져 있고 이사장은 기관지인 TU Lakide에서 출자금은 조합원에게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파고르 가전의 간부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부채액이 너무 크고 파고르 가전에 현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자금 상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반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채권으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협동조합 자본 또는 출자금이 회계상 자산인지 부채인지에 대해서 스페인은 일본과 달리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는 불명확하다. 파고르 가전의 사회위원회(노동자조합원조직, 정식기관)는 노동자 조합원을 채권자로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의 출자금과 임의 적립금은 8천 7백만 유로이며 파고르 가전의 이사장은 조합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사회위원회는 노동자조합원들이 경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출자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전국유가증권시장위원회(CNMV) 및 바스크주정부 사회적경제국이 판단에 관여하고 있다.

5. 노동자조합원제도와 몬드라곤그룹의 지원

채권자회의의 결론이 어떠하든 파고르 가전은 해체될 것이다. 현재 1,865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799명의 몬드라곤 그룹 내 재배치, 590명의

조기퇴직이 진행 중에 있다. 도산에 이르기 직전까지 파고르 가전은 경영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도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제경비의 삭감, 급여 삭감을 실시했다. 2012년도에는 파고르 그룹 중, 산업기계그룹의 연간 임금을 7.4% 삭감(찬성 약 90%), 가전 그룹 임금의 8.81% 삭감(찬성 87%)을 각 총회에서 결정했다.

또한 몬드라곤그룹의 각 협동조합은 임금의 5%를 삭감해서 파고르 가전 지원에 쓰도록 했다. 이것은 몬드라곤그룹의 연대 대응이며 협동조합그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몬드라곤 그룹은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파고르 가전에 재정 지원을 했으며 2012년까지 1억 유로가 누적되었다. 이것은 그룹의 협동조합연대기금, 교육진흥기금, 투자적립금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몬드라곤그룹은 신규 상품 등의 개발을 IKERLAN기술개발 센터가 하도록 하고 LAGUN-ARO공제조합을 통해 실업노동자 조합원의 재배치(현재 1,200명 대상)등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6. 앞으로의 파고르 가전

청산 절차가 종료되고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현재 불명확하지만 파고르 가전 그룹은 해체하고 몇 개의 제품 분야, 특히 주방 기기 분야는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분야는 외국 제조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진다.

- (1) 협동조합 본사: 일부 존속, 매각, 폐지
- (2) 자회사: 분리, 독립, 폐지
- (3) 해외 공장: 매각, 존속
- (4) 노동자: 재배치, 재훈련, 실업, 퇴직

7. 도산의 본질

파고르 가전 및 몬드라곤그룹은 협동조합원칙의 참가를 테제로 한다.

참가란 ①출자 참가, ②노동 참가, ③경영 참가 3가지이다. 지금까지도 협동조합의 도산·폐쇄 또는 경영위기 사례가 몬드라곤그룹 내에서 존재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는 소규모였기 때문에 그룹 내부의 안전망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파고르 가전에 대해 말하면 1974년 파고르 파업의 경험 속에서 일부 노동자조합원이 협동조합 원칙에서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협동조합기업의 정관 및 내규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파고르는 협동조합으로서 참가를 보다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파업한 노동자조합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인사문제도 해결했다. 그러나 이들 자체는 협동조합기업 내부의 조합원 참가 문제이며 이른바 경제민주주의 논의 범위 내에 있었다. 즉 파고르 가전 그 자체가 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기업의 도산 원인은 단지 외부적 요인만 있으며 내부적 요인은 전혀 관계가 없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반대로 협동조합기업의 도산 자체가 협동조합기업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될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자본주의기업의 도산이 자본주의기업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같다. 그렇다면 파고르 가전의 도산이 협동조합 기업의 본질 또는 원칙에서 이탈한 것인지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게 된다. 이 점에서 먼저, 조합원 경영참가에 따른 도산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질 경우의 의미일 것이다. 파고르 가전 본사의 종업원 조합원 비율은 80%였지만 파고르 가전그룹 전체의 조합원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파고르 가전이 프랑스의 Brandt사를 매수해서 급속하게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비율이 증가했으나 협동조합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1990년대부터 이 점에서 변화해 왔던 것이다. 이른바 자회사화 문제

이다. 또한 냉장고 공장과 세탁기 공장이 몬드라곤에 소재해 있고 이것을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협동조합 원칙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도산의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파고르 기업문화는 내부적 다양성, 이질성,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가치들의 상호 관계에 있다. 그것은 일반 자본주의 기업의 주주 우선 경영방식, 명령, 균질화된 종업원 집단과는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 경쟁적 시장경제 속에서 협동조합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기업과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경영민주주의이다. 파고르 가전은 글로벌화 속에서 세계 사회적 경제 섹터와의 협동을 이념으로 내걸었다.

파고르 가전의 실패의 간접적인 원인은 글로벌 시장 속에서 협동해야 할 사회적 경제 기업이 다른 나라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고르 가전의 실패 책임을 그들 자신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사회적 경제 섹터를 여러 나라에서 발전시켰다면 파고르 가전은 도산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파고르 가전 도산은 협동조합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과 같은 대량 해고 등으로 대응했다라면 파고르 가전은 기업으로서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렸을 것이다. 몬드라곤그룹은 실업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면서 새롭고 고도화된 제품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산업민주주의를 지키는 협동조합기업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려고 하는 듯하다. 이것이 몬드라곤그룹이 혁신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기술연구센터를 12개소나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론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1) 협동조합기업 청산에서 출자금, 적립금의 취급
- (2) MCC연대기금의 역할과 범위
- (3) 국제시장 또는 산업부문의 선택과 협동조합기업의 지속을 위한 방법
- (4) 협동조합과 자회사 문제, 법인형태 및 노동형태와 사회보장제도
- (5) 협동조합 다국적기업의 여러 문제, 법제, 국제시장과 협동조합

- (6) 협동조합의 매니지먼트와 거버넌스
- (7)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개발
- (8) 협동조합간 협동의 향상 방법
- (9) 글로벌한 사회적 경제 섹터의 형성 [icoop](#)

번역 : 이향숙((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モンドラゴン、ファゴールの失敗

石塚秀雄

1. モンドラゴンの価値

モンドラゴン協同組合複合体(MCCまたはCM)は、スペインバスク地方に本拠を置き、労働者協同組合形式を中核とした、各種協同組合とその子会社により形成された世界的にも得意な社会的経済企業グループである(表1参照)。工業分野、流通分野、金融分野、教育研究分野の4つの柱が協同連帯をして経済民主主義と社会的貢献を目的に掲げている。その理念は1991年に制定されたモンドラゴン原則に示されている。歴史的には、創設者アリスメンディアリエタが1941年からモンドラゴンにおいて地域における若者にたいする教育文化活動という準備期間から始まり、技術学校を作った。1956年に、それらの若者たちの一部によって最初の工業協同組合ウルゴールが設立された。このウルゴールは、ファゴール家電となった。したがって、ファゴール家電の成功の歴史は1956年に始まり、2013年に挫折を迎えたのである。

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は、今回のファゴール家電の倒産により、一つの失敗を経験することになったが、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自体が致命的な危機を迎えているわけではない。しかし、今回の失敗により、モンドラゴンを、モンドラゴン自体の意志に反して、理想化したり神話化するということはなくなるであろう。また逆に、モンドラゴン協同組合運動を全面的に否定するというのもまた、愚かなことである。われわれは協同組合運動の価値や原則に照らしてどのような問題点があるのかを整理することが必要であろう。

なぜ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が破産申請を選択したのかは、今のところ判断材料が少なく不明である。外部的にはバスク政府もファゴール家電グ

ループの破産を望んではおらず、資金支援をしていたし、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自体もぎりぎりまで存続のための対応と支援をしていたからである。論点としては、①資金調達問題、②マーケティング戦略問題、③経営陣の判断問題、④協同組合企業の構造的な問題、⑤協同組合労働と地域雇用問題、などがあると思われる。

表1. 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の概要(2012年度) 単位:百万ユーロ(前年対比)

項目				
総資産	35,887(+10.6%)			
事業規模 (産業部門・流通部門)	12,903(-7.6%)	輸出4,004		
企業数	289	協同組合110	子会社179	
協同組合	110			
子会社	179			
従業員数 (比率は表示のママ)	80,321人	バスク州42% (33,734)	その他スペイン40% (32,128)	外国17% (13,655)
工業部門	36,963人	ファゴール他	約100の協同組合	組合員比率 86%
内、研究開発部門	2,096人	15センター		
流通部門	39,839人	エロスキ生協他		
金融部門	2,486人	カハラホラル銀行、ラクンアロ共済組合など		
教育部門	1,033人	モンドラゴン大学ほか	生徒数11,248人	
投資総額	331			
組合員出資金	1,838			

出所:informe annual 2012, CMに基づき作成

表2. モンドラゴン産業部門 (単位:百万ユーロ)

	2011	2012
販売高	5,929	5,812
、内 輸出高	3,973	4,004
投資	335	307

出所:Informe Annual 2012, CM

2. ファゴール家電の倒産と家電市場

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の中心的存在であったファゴール家電が2013年10月に倒産し、ギプスコア県の商業裁判所による債権者事前協議に入った。ファゴール家電がこれまでの形で存続する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ファゴール家電はバスク自治州の国内総生産の3.2%、工業生産の7.4%、雇用の3.5%、工業分野の雇用の8.4%、バスク州の輸出の12.2%、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の事業高の8.1%、従業員数の5%を占めている(Dossier CM, 2013)。ファゴール家電はスペインでは企業グループとしては第5位、ヨーロッパでの家電メーカーとしては第4位であった。スペイン市場占有率17.7%、フランス14%、ポーランド7.9%であった。

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はファゴール産業機械グループ(ファゴールアラサテ、ファゴールエデルラン、ファゴールアッセムブリ、コブレシ各協同組合など)とで、ファゴールグループを構成している。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は、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の中で、人員の約5%、事業高(産業・流通部門)の約10%を占めている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今回のモンドラゴンの失敗は家電部門で発生した出来事である。ファゴール家電の取り扱い製品には、いわゆる白物家電と呼ばれ、冷蔵庫、洗濯機、キッチンシステム、小型家電製品など多様な製品がある。テレビ、AV機器、パソコンなどは含まれない。

ファゴール家電が倒産という選択をした理由は、ファゴール家電の理事長

によれば、第一の直接的原因は、スペインおよびヨーロッパ家電市場の5年にわたる低迷である(モンドラゴン機関誌TU Lankide 2013年10/11月号)家電市場を外部的要因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以降、スペイン、イタリアなどはとくに財政危機と景気低迷が続いた。スペインの家電市場全体が、2007から2012年にかけて、売上げが半減した(スペイン家電製造業協会ANFEL、2013)。スペインおよびヨーロッパの家電市場の2007年以降の不況の期間での大きな変化の一つは、中国からの輸入が増大したことである。このことは製品価格引き下げ競争を生じ、家電品の付加価値の低下、労働費用の相対的上昇などの問題をヨーロッパ家電メーカーにもたらした。ヨーロッパの家電市場は、家電品という生活様式に根ざすものであるために、全体としてヨーロッパのメーカーが中心で推移してきた。スペインの家電製造業の売上げが縮小し、その労働人口が縮小し、メーカー数の減少という傾向が2007年位をピークにして全体として下降気味となった。こうした外的要因がファゴール家電の赤字を累積させていったことが事業報告書から見て取れる。

では、ファゴール家電はその不況にどのように対応しようとしたのか。ファゴール家電は存続のために、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や金融機関およびバスク政府から財政支援をうけることで対応しようとした。一方で、2012年12月にファゴール家電は「2013-2016戦略計画」を作り、同総会で承認した。この時点では、累積赤字にもかかわらず、積極的拡大計画により発展させていこうという考え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TU Lankide2012年6月号)。それによると、国際市場とりわけ、今後発展が見込まれる東欧(とりわけポーランド)、アジアとりわけ中国企業HAIERと共同しDe Dietrichブランドを売り込むなど、中東などを重視して生産拡大を行い、2016年までの四年間で、海外市場で2億ユーロ、増加させるという目標を掲げた。スペイン家電市場が縮小傾向にあるにもかかわらず、というかだからこそというべきか、生産拡大と国際協力という積極的拡大方針を採択した。それは世界の社会的経済企業とともに、協同組合的持続的雇用を拡大するという考えであった。またファゴ

ール家電は製品の新規開発、エコロジーを重視した製品などを重視してきた。これはヨーロッパ先進国の消費者のニーズに応え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すなわち、グローバル化と製品の高度化という2つの目標を掲げたのであった。

表3. 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収支表(単位:千ユーロ)

	2010	2011		2010	2011
固定資産	702,625	661,620	固定負債	496,355	378,604
流動資産	707,565	618,815	流動負債	687,199	746,844
			従属的 出資金	106,434	106,434
資産総額	1,410,190	1,300,435	負債総額	1,410,190	1,300,435

出所:Fagor Electrodomesticos,S.Coop, Cuentas Anuales 2011により作成

表4. 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売上高

年度	金額 (百万ユーロ)	前年対比	海外 販売比率
2000	1,031	118.2%	438(40%)
2005	1,639	143%	893(54%)
2007	1,947	99.7%	1,227(63%)

2009	1,576	86.9%	1,087(69%)
2012	1,245	93.4%	946(76%)
2013第一四半期	491		

出所:MCC(CM)InformeAnuria 各年度に基づき作成

表5.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の従業員数(労働者組合員数)

人数	2011	2010
直属人員	3,511(2,219)	3,733(2,325)
間接人員	3,130	4,527
従業員数	6,641	8,260

出所:Fagor Electrodomesticos,S.Coop, Cuentas Anuales 2011

表6. 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の収益(単位:1,000ユーロ)

	2011	2010
本体協同組合	-24,651	-3,860
Fagor Brandt (フランス)	1,331	-3,806
Fagor Mastercook (ポーランド)	223	-155
その企業	-2,636	-2,049
合計	-25,733	-9,870

出所:Fagor Electrodomesticos,S.Coop, Cuentas Anuales 2011

表7. ファゴール家電の主要ブランド

Fagor, Brandt, De Dietlich(世界市場)
Aspes, Edesa(スペイン市場)
Sauter, Vedette 、Thompson (フランス市場)
Ocean, SanGirogio (イタリア市場)
Mastercook(ポーランド市場)

出所:Fagor Electrodomesticos, Informe 2004

表8. 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の主要海外子会社 (2004)

名称	所在地	取得年	従業員数
Extra Electromanager (株式会社)	モロッコ	1994	212
Worpmat (株式会社)	ポーランド	1999	1,254
Gayer-Gastech S.A.(株式会社)	バスク地方	1998	272
Brandt (株式会社)	フランス	2001	4,644

出所:Fagor Elctrodomesticos, Informe 2004

家電市場の後退という外部的要因にたいして、グローバル化と製品高度化で挑戦するという計画を立てたファゴール家電が、倒産して、他の競争相手である多国籍企業は倒産しない理由はなんだろうか。競争相手にはElectrolux(スウェーデン)、BSH(ドイツ)、Whirlpool(アメリカ)、Merloni Electrodomesticci(イタリア)などは、いずれも資本主義的企業(株式会社)であり、彼らはいずれも工場閉鎖、アジアなどへの工場移転、人員削減などの方法によって経営危機を回避している。たとえば、エレクトロラックス(Electrolux)は2007年から2013年にかけて多くの工場を閉鎖するか縮小している(表9、参照)。

表9. エレクトロラックスの工場閉鎖

所在地	所在国	主要品目	閉鎖年
トルスビク Torsvik	スウェーデン	小型家電製品	2007
ニュールンベルク Neremberg	ドイツ	洗濯機、 食器洗い機	2007
アデレード Adedaide	オーストラリア	食器洗い機	2007
フレデルシア Frederecia	デンマーク	クッカー	2007
アデレード Adelaide	オーストラリア	洗濯機	2008
スペニームーア Spennymoor	イギリス	クッカー	2008
長沙 Changsha	中国	冷蔵庫	2009
スカンデッチ Scandicci	イタリア	冷蔵庫	2009
サンクトペテルスブルク Sr. Petersburg	ロシア	洗濯機	2010
モタラ Motala	スウェーデン	クッカー	2011
ウェブスターシティ Webster City	アメリカ	洗濯機	2011
アルカラ Alcala	スペイン	洗濯機	2011
ラソンプション L' Assomption	カナダ	クッカー	2013

出所:Electrolux Anural Report 2012

表10. ヨーロッパ主要国の家電製造業の規模（2012年）

	業態数	雇用数	生産高(百万ユーロ)
ドイツ	270	53,589	8,799
スペイン	287	18,786	3,380
フランス	165	14,470	2,704
イタリア	602	55,274	11,439
ポーランド	239	15,943	1,656
イギリス	398	18,209	3,278
Eu 27	3,422	237,300	36,900

出所:Eurostat, esnterprse manufacturing subsectors annual, 2012

表11. ヨーロッパ主要国の産業労働コスト 単位:ユーロ（2011）¹

国名	/1時間	国名	/1時間
スペイン	23.0	イタリア	27.3
フランス	36.6	ポーランド	7.4
ドイツ	35.4		
イギリス	23.3		

出所:Eurostat

また、ヨーロッパ市場に入ってくる家電製品輸入先は中国58%、トルコ16%、韓国7%、アメリカ3%(2007)である(Dadacomex europaヨーロッパ商業

¹ Labor costとは賃金プラス社会保障経費など。

統計)。スペインの家電品売り上げ比率は、洗濯機27.5%、調理台(クッカー)30.9%、オーブン16.0%、冷蔵庫14.5%、食器洗い機10.6%である(2007)(ANFEL、スペイン家電連合会)。2007年から2013年にかけてスペイン家電市場の売上高は56%下落した。各家電メーカーは人員削減、工場移転などの方法で対応したのである。しかしファゴール家電はそうした方法を採用しなかった。それは協同組合企業であったからである。ヨーロッパおよびスペインの大きな経済不況という外部的要因に耐え抜くという協同組合企業の内部的問題があったといえる。

表12. スペイン家電品の輸出入 (単位:百万ユーロ)

	2000	2005	2007
輸出	1129.2	1246.7	1128.8
輸入	1299.6	1713.7	2000.8
バランス	-170.4	-467.8	-872.2
輸出輸入対比	88.9%	72.7%	56.4%

出所:DataComex. Minitsterio de industria

表13. スペインの家電品輸入国 (単位:百万ユーロ、金額比)

	2000	%	2007	%	2011	%
中国	114.3	8.8	489.7	24.5	474.0	34.2
ドイツ	273.2	21.0	350.6	17.5	191.5	13.8
イタリア	326.0	25.1	315.5	15.8	140.0	10.1
フランス	167.0	12.8	163.1	8.2	76.5	5.5

トルコ	32.5	2.5	141.7	7.1	138.4	10.0
ポーランド	1.7	0.1	97.8	4.9	99.7	7.2
韓国	55.4	4.3	86.7	4.3	25.7	1.9
イギリス	76.7	5.9	52.2	2.6	25.2	1.8

出所:Ministerio de Economia y Goonpetitividad. DataComexに基づき作成。

表14. スペイン国内家電品製造台数前年対比増減率

	2003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冷蔵庫	+11.36%	+7.87%	-14.75%	-11.30%	-11.19%	-11.58%	-20.49%	-11.17%
洗濯機	+4.83%	+10.42%	-13.61%	-5.43%	-4.11%	-7.07%	-10.98%	-4.64%
乾燥機	+24.13%	+1.70%	-22.87%	-12.35%	+12.46%	-23.21%	-28.44%	-6.32%
食器洗機	+8.72%	+3.27%	-12.11%	-16.51%	-1.22%	-10.94%	-12.25%	-8.87%
調理台	-6.65%	-9.90%	-17.51%	-19.30%	-31.09%	-7.04%	-31.88%	-17.91%
オーブン	+3.30%	+2.01%	-16.59%	-20.00%	-3.14%	-12.95%	-14.05%	-3.49%
その他	----	----	----	----	----	----	----	----
全体	+10.34%	+8.20%	-17.62%	-15.48%	-4.01%	-14.44%	-13.86%	-6.412%

出所:ANFEL. Estadicasに基づき作成

3. ファゴール家電の倒産の経緯

倒産に至る寸前まで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が積極的に経営危機を開きたいという意志をもっていた。2012年12月13日に作られたファゴール家

電グループの「2013年2016年戦略計画」に基づいて企業存続を考えたと思われる(TULakide)。計画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すなわち、家電不況に立ち向かうために、外部資金導入を図り、新製品開発に力を入れて、スペイン市場での回復、また海外市場とりわけ、アジア、東欧、中近東市場を見据えて、生産増加という拡大路線を追求す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技術開発に10.8百万ユーロを2012四半期に投資、また中国Haierとポーランドにそれぞれ55百万ユーロ、56百万ユーロ。計画では2016年までに200百万ユーロ(2012年117百万ユーロ)の事業高にするという野心的なものであった。

しかし、急転回が起きたのは、2013年9月である。2013年前期の売上高が予想に反して低かったからである。このために、それまでファゴール家電の2013-2016年戦略計画で示されていた方向に対する信頼性が一気に崩れたものと思われる。

以下簡単に経過を列記する(TU Lankide 2013年10-11月号に基づく)。

2013年5月 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会議7000万ユーロを再建組合員雇用基金(FRES)としてファゴール家電融資支援決議。

2013年9月 ファゴール家電さらに5000万ユーロの支援を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に要請。

2013年10月15日 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会議全会一致で、5000万ユーロ支援を否決。この融資によっても、ファゴール家電の未来を保障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

2013年10月16日 ファゴール家電は、ギブスコア県の商業裁判所に事前債権者会議の手続きを申請、これは4ヶ月の債権者手続きのなかで、計画の再検討と財政再建の方策を探すというものであった。

2013年10月30日 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としては、ここ数年で約3億ユーロを支援してきて、これ以上は各協同組合が負担できないと発表。

2013年10月31日 ポーランドの子会社マスタークック(Mastercook)の債権者会議も裁判所に要請。ファゴール家電とエデサの雇用を守るため。(しかし、裁判所は受理しなかった模様。すなわち、外国に所在するためではな

いかと思われる。EU清算法との関係を見ないと、詳細は不明)

2013年11月6日 フランスの子会社ファゴールブランド(Fagor Brandt) の債権者手続きが示される。(こちらも、調べていないので不明)

2013年11月13日 ファゴール家電の清算手続き申請

2013年11月24日 エデサ精算手続きを商業裁判所に申請。

2013年12月17日 官報(BOE)告示。ファゴール家電とエデサのギブスコア県商業裁判所による債権者会議(清算手続き)の開始。手続き管理人(管財人)として、3つの管財事務所、

EVE Administracion Concursal, SLP-Howarth Auditores, SLP-Consultores Saymaが商業裁判官から指名される。スペイン清算法(Ley 22/2003)

4. 債権者会議のゆくえ

ギブスコア県商業裁判所による債権者会議では、とりあえず、本体であるファゴール家電とエデサの債権者会議を行い、それぞれの財務状況、負債額、債権者の特定などの作業を進めていくことになった。ファゴール家電の子会社であるフランスのファゴールブランドやポーランドのマスタークック、およびスペイン国内にあるグルマル社(Grumal)の取り扱いについて、まず本体の財務状況が明かになってからどのように取り扱うかを検討することになるようである。EU圏内での法的手続きの関係やまたスペイン国内での手続きの詳細などについては、よく分からない。

また、債権者の申請を任意事前債権者会議において行う旨、官報告示されたが、債権者の優先順位や支払い可能性や、そもそもファゴール家電を全面的に廃止させるのか、それとも部分的に存続させるのかも、商業裁判所の債権者会議の経過をみなければどうなるか分からない。とりわけ、債権者の中には、バスク政府、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本体、民間銀行、供給業者などがあり、またファゴール家電とエデサ自体の労働者組合員の出資金

や任意積立金の取り扱いがどうなるかも不明である。不明というのは、協同組合出資金や積立金が戻るかどうかをファゴール家電自身が決定できなくなったからである。破産申請をしたことにより、判断は協同組合自身の手から離れた。協同組合出資金や組合員積立金は、「副次的出資金」とよばれ、労働者組合員が取り戻せる債権となり得るかについては、全国再建評価委員会の判断待ちとなっているからである。2013年10月の時点ではモンドラゴン内部でも見解は分かれており、機関誌TU Lankideiにおいて、理事長は出資金は組合員に戻るといい、ファゴール家電の幹部は戻らないだろうと言っていた。いずれにせよ、実態的には負債額が大きすぎて、またファゴール家電には現金がほとんどないので、出資金償還の権利がみとめられたとしても、返却される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し、また債権として認められたとしても優先順位は低いために、戻らないという可能性が大きいと思われる。いわゆる協同組合資本あるいは出資金が、会計上資産なのか負債なのかというのは、スペインにおいては日本と異なり資産にカウントしており、どのような判断が降りるのかは不明である。ファゴール家電の社会委員会(労働者組合員組織、正式機関)としては、労働者組合員を債権者として認めるよう要求している。組合員出資金と任意積立金は8700万ユーロあり、ファゴール家電の理事長はこれらは組合員に返済不能だと述べている。また同時に、社会委員会は労働者組合員たちに経営責任があることを認めている。出資金等の取り扱いについては全国有価証券市場委員会(CNMV)およびバスク州政府社会的経済局が判断に関与するようである。

5. 労働者組合員制度と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の支援

債権者会議の結論がとてようになるにしても、これまでのファゴール家電は解体する。現在の1865名の組合員については、すでに799人の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内部での再配置、590人が早期退職を行っている。倒産に

至る寸前まで、ファゴール家電は、経営改善のための内部的努力もしていた。具体的には、諸経費の削減、給与カットをおこなった。2012年度には、ファゴールグループのうち、産業機械グループの年間賃金を7.57%カット(約90%)、家電グループの賃金を8.81%カット(賛成87%)を各総会で決定した。また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の各協同組合は賃金の5%をカットして、ファゴール家電支援に充てることにした。これは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における連帯的対応であり、協同組合グループ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ある。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とし全体では2008年度からファゴール家電にたいする財政支援を継続し、2012年までに100百万ユーロの累積となった。これはグループの協同組合連帯基金、教育振興基金、投資積立金などを通じて行われた。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の支援内容は、また、新規商品等の開発をIKERLAN技術開発センターが行うこと、ラグンアロ共済組合を通じて失業労働者組合員のへ再配置(当面は1,200人を対象)を進めている。

6. ファゴール家電の今後

清算手続きが終了してどのような結論がでるかは、現在のところ不明であるが、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は解体し、いくつかの製品分野、とりわけキッチンシステムの分野は存続させたいようである。この分野は外国メーカーが参入しづらい分野だと思われる。

- (1) 本体協同組合:一部存続、売却、廃止、
- (2) 子会社:分離、独立、廃止、
- (3) 海外工場:売却、存続、
- (4) 労働者:再配置、再訓練、失業、退職、

7. 倒産の本質

ファゴール家電および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は協同組合原則における参

加をテーゼとする。参加とは、①出資参加、②労働参加、③経営参加の3つである。これまでも協同組合の倒産・閉鎖あるいは経営危機という事例が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内で存在した。しかし、これらの場合は、小規模であったためにグループ内部のセフティネットの範囲内で解決できたといえる。ファゴール家電についていえば、1974年のファゴールのストライキの経験では、一部の労働者組合員の協同組合原則の逸脱が問題となり、それをもたらしたのは、協同組合企業定款および内規の不備であったという結論であった。ファゴールはより協同組合的参加を制度化することで解決とした。ストライキは労働者組合員が職場復帰することにより、人事的にも解決した。しかし、これ自体は協同組合企業内部における組合員参加問題であり、いわゆる経済民主主義の議論の範囲内であった。すなわち、ファゴール家電そのものが倒産消滅するという問題ではなかった。それでは、協同組合企業の倒産の原因は外部的要因のみであり、内部的要因はまったく無関係であるのか。そのように言うことはできない。また逆に、協同組合企業の倒産自体が協同組合企業の本質の否定になるのであろうか。そう言えないのは、個別の資本主義企業の倒産が、資本主義企業の本質の否定にはならないことと同じである。すると問題は、ファゴール家電の倒産は協同組合企業の本質あるいは原則から逸脱したものであるかどうかという問題提起が必要ということになるであろう。この点で第一に、組合員経営参加により倒産という結論に導かれたということの意味である。本体のファゴール家電における従業員における組合員比率は80%であったが、ファゴール家電グループ全体としては組合員比率は1/3にすぎない。ファゴール家電が、フランスのブラント社を買収して急速に規模を拡大し、またグローバル化を進める過程で、非組合員比率の増加における協同組合原則の適用は理論的に発展してこなかった。1990年代からこの点で変化してきたのである。いわゆる子会社化問題である。また、冷蔵庫工場と洗濯機工場がモンドラゴンに所在しており、これを外国等に工場移転するということが、地域への仕事創出という協同組合原則によりできなかったことが、倒産の大きな原因だと思われる。

ファゴール企業文化は、内部的多様性、異質性、経済的効率性と社会的価値の相互関係であると主張してきた。それは一般資本主義企業における株主優先の経営方式、命令、均質化した従業員単位とは異なるものとして運営されてきた。競争的市場経済の中で、協同組合企業が存続するためには、資本主義企業と同じ手法をとらないものがある。それは経営民主主義である。ファゴール家電はグローバル化の中で、世界の社会的経済セクターとの協同を理念として掲げていた。

ファゴール家電の失敗の遠い原因は、グローバル市場の中で協同すべき他国の社会的経済企業がほとんど存在しないことであろう。ファゴール家電の失敗の責任を彼ら自身だけに求めるのは正しくない。われわれがそれぞれの国において社会的経済セクターを発展させていけば、ファゴール家電は倒産しなくてすんだかもしれない。

ファゴール家電の倒産は協同組合原則を守ったために発生したことである。資本主義的企業のように大量首切りなどで対応していたら、ファゴール家電は企業としては生き残ったかもしれないが、協同組合として社会的経済企業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はうしなったであろう。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は、失業した労働者たちに所得保障をしつつ、新しい高度な製品分野の開拓によって、産業民主主義を守る協同組合企業と新分野を新たに創出しようと考えているようだ。これがモンドラゴングループが原則としてイノベーションを掲げて、技術研究センターを12カ所持っている理由である。

最後に、協同組合論の再検討事項を以下に列記する。

- (1) 協同組合企業清算における出資金、積立金の取り扱い
- (2) MCC連帯基金の役割と範囲
- (3) 国際市場または産業部門の選択と協同組合企業持続のための方法
- (4) 協同組合と子会社問題、法人形態および労働形態と社会保障制度
- (5) 協同組合多国籍企業の諸問題、法制、国際市場と協同組合
- (6) 協同組合におけるマネージメントとガバナンス
- (7) 協同組合の地域社会開発

(8) 協同組合間協同のバージョンアップの方法

(9) グローバルな社会的経済セクターの形成 icoop

미디어 공공성 현황과 그 회복 가능성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들어가는 말 : 미디어 공공성이란?

미디어 공공성(公共性, public character) 개념은 두 가지 층위에서 성립한다.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지닌 객관적인 어떤 속성으로서의 공공성이다. 다른 하나는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두루 유익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위적·규범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바, 그 요청에 잘 부응할 수 있기 위해 미디어가 준수하거나 구현해야 하는 바람직한 작동원리 혹은 구비해야 하는 속성으로서의 공공성이다.

국어사전에서는 공공성을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풀이하고 있다. 이 풀이의 연장에서 볼 때, 미디어 공공성이란 미디어가 지닌 공공적(公共的)인 성질 자체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커다란 영향력과 광범한 편재성 그리고 강한 공공재적 성격¹ 등을 지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에 두루 그리고 깊게 개입하고 있다. 미디어는 한 사회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의 유지와 발전에 치명적으로 관여한다. 개개인의 일상생활도 미디어를 빼곤 생각할 수 없다. 법률, 교육, 의료, 안전보장 등이 그런 것처럼, 미디어도 사람들의 삶에 광범하게 그리고 깊게 관여되어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미디어(또는 언론)는 공공성이 매우 큰 영역이다’라고 말할 때의 공공성 개념이다.

규범 층위에서의 또 다른 미디어 공공성 개념은 언론제도나 콘텐츠 또는

1 공공재적 성격은 대가의 지불 없이 소비할 수 있다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하위 성질의 복합이다. 그러한 성질들로 인해 공공재는 그 공급이 시장 자율에만 맡겨질 경우 공급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워 사회에 적절히 공급되기 어려운 시장실패의 위험을 내포한다.

수행방식에서 미디어가 마땅히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목이나 조건에 관한 것으로, 먼저 덕목이라 함은 객관성, 공정성, 공익성, 균형, 여론의 다양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미디어의 작동과정에서 구현되어야 할 저널리즘²의 원리들을 말하며, 조건이라 함은 표현의 자유 보장, 정부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편집 또는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미디어 소유의 분산, 시청취구독률의 분산, 특정 계층이나 분야 및 지역에 기초한 다양한 소수파 저널리즘의 작동, 각계각층 시민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 저널리즘이 정상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요소들을 말한다. ‘미디어(또는 언론)는 공공성을 구현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닌다’라고 말할 때의 공공성 개념이다.

한편, 미디어가 방송이나 아니냐에 따라 그 공공성을 구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방송 이외의 미디어들은 그 공공성의 구현이 자율에 맡겨지고, 국가가 그 같은 자발적 기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방송의 경우 그 공공성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방식이다. 방송이 다른 미디어보다 공공재적 성격, 영향력, 편재성 등 공공적(公共的) 성질이 크다는 점, 전파자원이 원천적으로 국민 일반의 소유라는 점, 미디어 공공성은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자율에 맡겼을 때 그 구현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6월 항쟁으로 미디어 공공성의 길 열렸으나,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끝내 외면

이 글에서 다루려는 것은 후자의 개념이다. 규범 층위의 미디어 공공성이 현실의 과제로 부각되는 것은 통상 민주주의 원리의 작동을 가로막던

2 저널리즘이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와 해설 등 뉴스를 전달하고, 주의주장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며, 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언론현상 또는 그러한 실천과정을 뜻한다. 그 핵심은 방송이 시민들에게 공적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형성·교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결정적 원인이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는 시기부터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1987년 6월항쟁 이후다.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요청은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있어야만 비로소 유의미해진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인 70~80년대에 질기게 이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언론운동은 미디어 공공성의 주요 덕목이나 조건들을 구현·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의한 지배와 억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곧 민주혁명의 일환이었다.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내건 1987년 6월항쟁이 국민의 승리로 기울자, 당시 집권세력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원을 새로운 주자로 내세워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낮은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반영한 8개 항목의 6.29선언을 공표했다. 그중 다섯째가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언론 자유 창달 선언이다.

그렇지만, 이후 새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는 기존 족벌신문과 새로 창간한 대기업·거대종교 신문의 한겨레신문 포위 및 사영 상업방송 SBS 허가 등 ‘권경언³ 수평유착’과 ‘자본에 의한 언론통제’의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그리고 동시에, 공영 미디어에 대해선 ‘정권에 의한 장악의 해소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처벌하는 등 기만과 탄압의 전술로 대응했다. 그리고 그러한 기만정책의 연장선에서 <보도협조>라는 이름의 언론통제 시스템을 비밀리에 운영하다 들통이나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다.

‘권경언 수평유착’과 ‘자본에 의한 언론통제’는 김영삼 정부 때에도 변함없었다. 초원복집 사건⁴에서 보듯, 삼당합당의 집권세력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들을 불법부당하게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했고, 시장 지배적 신문들은 기꺼이 보수수구 정권의 선거운동원을 자임하고 나섰다.

3 편집자 주: 정권 경제 언론

4 편집자 주: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출처: 위키백과사전)

공영 미디어들은 여전히 정권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관료주의적 내부통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KBS 노조는 90년 4월에, MBC 노조는 92년 9월에 정권의 방송장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방송민주화 투쟁을 전개했고, 이후 방송에서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보수 관료집단과 방송민주화를 요구하는 개혁적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내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그 시기 미디어 공공성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 표류했다.

민주정부, 사회적 합의 통해 방송 공공성의 교두보 마련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를 구성·운영했다. 김대중 정부는 방개위의 제안에 기초해 2000년 새 방송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방송 공공성의 내용(방송원리)과 형식(방송구조)은 이때 만들어졌다. 방개위는 수구보수와 개혁진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양한 사업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포괄한 사회적 합의체였다. 방개위가 합의한 방송 공공성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방송은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⁵ 등을 구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 여론형성과 시청자권익 보호에 기여해야 하며, 그러한 의무의 수행을 위해 방송은 정부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외적 자유), 제작·편성의 자율성(내적 자유), 지역성, 시민의 방송참여와 시청자주권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 등에 기여해야 하며(제

5 여론다양성은 방송의 민주적 여론형성 기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방송법은 방송이 내적·외적 여론다양성을 구현하고, 정부나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함으로써 저널리즘 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에 대해서도 시청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의 수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시청취율이 일부 매체에게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각 방송이 그 내부에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펼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1조), 이를 위해 방송은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하고(제4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제5조). 또한, 방송은 보도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제6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사람들을 방송편성에서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제6조 제2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힘써야 하며(제6조 제4항), 소수자나 약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고(제6조 제5항),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하며(제6조 제6항), 정치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제6조 제9항, 제69조 제2항).

그러나 방개위가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방송법은 뜻은 높되 구체적인 실행 장치는 부실한 것이었다. 방송 공공성을 위한 덕목들을 망라하 다시피 했지만, 방송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합의제 독립행정위원회(현 방통위)의 위원구성과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등 방송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는 집권세력이 구조적 우위를 점하도록 만들어 났다. 또한,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대해 누구도 법률에 의해 특정되지 않은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정작 그 실현의 방도를 사업자에게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이 밖의 다른 공공성 항목들도 사정은 이와 비슷했다.

뜻이 훌륭한데 그 실행 장치가 부실하면, 그 실행은 실행자의 선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당시 방송법이 그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는 방송 공공성에 대해 선의와 적극성을 가졌고, 그 결과 두 정부 시기 동안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방송의 공공성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 공공성은 관료주의적 내부통제의 혁파를 통해 경영과 조직 및 문화의 수준으로까지 확장되었다.

KBS는 대팀제 도입을 통해 자율적인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했고, MBC는 노사협약제와 분권적 본부장제의 안착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방송사 외부나 내부의 그 누구라도 제작 당사자가 아니면 개입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구현했다. 그 결과 관료주의적 내부통제가 줄고, 정

부나 광고주 등 외부권력의 은밀한 개입도 축소되었고, 정부와 대기업 등 거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강화됐다. 당시 정부의 중점과제였던 한미FTA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비판과 폭로 보도도 이 같은 배경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와 박근혜 정부의 그 계승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은 핵심 실세의 개인적 인터뷰 형식을 빌어 핵심적으로 표명된 바 있다. 2008년 8월 박재완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KBS는 정부 산하기관, 사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구현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은 당시 벌어졌던 정부의 언론장악 논리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 준다.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검찰·국세청·교육부·방통위·공영방송 이사회 등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국가기구와 공공기구를 동원해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 미디어들을 불법부당하게 장악했다. 이로 인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사명으로 하는 공영 미디어들은 정권 등 기득권층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매우 불공정한 정권의 홍보도로 돌변했다. 많은 언론인들이 파업 등의 방법으로 이에 항의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1975년과 1980년 언론인 대학살과 유사한 해고 20명 등 440명에 달하는 대규모 징계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언론구조 자체까지 개악했다.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허황된 슬로건을 내걸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를 허용하고, 광고시장의 한계를 넘어서서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신문사에게 종합편성PP를 신규 허가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보수 기득권층의 여론지배와 여론 독과점이 더욱 심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들은 정부와 대자본의 차별적 시혜 없이는 정상경영이 어려운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치적인 검열의 도구로 악용해, 방송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탄압하고 축소시켰다. 나아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수사대 등이 일베⁶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대대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데서 보듯, 이명박 정부는 자유로운 인터넷 공론장을 억압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것을 정부가 주도하는 불법선거운동의 공간으로 적극 타락시키고 악용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7월 대선후보출마 기자회견에서 MBC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방송 언론의 공정성은 확보돼야 하고, 독립성이나 자율성도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공약집 287쪽에서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89쪽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통신심의의 남발과 인터넷포털사의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지적하고,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애초에 그런 공약이 없었던 듯 일절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태는 ‘고의부도 약속어음’ 형이다. ‘지난 정권 발생한 방송공정성의 훼손과 인터넷 언론자유 축소 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대통령 본인과 새누리당은 그 약속을 일절 외면하고⁷,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강행하는 한편, MBC 사장에 제2, 제3의 김재철인 김종철과 안광환을 연이어 투하하는 등 정권의 언론장악과 홍보도구화에 가일층 매진하고 있다.

6 여성, 호남, 이주민 비하와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일탈의 공간인 ‘일간베스트’는 정권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 공작으로 하루 평균 32만 명이 접속하는 극우 정치 공간으로 성장했다.

7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부출범과 함께 여야동수의 방송공정성특위를 만들어 방송공정성 회복·보장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후 특위를 공전시켜 약속을 파기했다.

나가는 말 : 미디어 공공성 회복의 가능성은?

김대중 정부는 방송 공공성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노무현 정부는 그것을 계승했다. 선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송 공공성의 장치들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공영 미디어들을 불법부당하게 장악하고 미디어 관련법을 개악하여 그 교두보를 파괴했다. 그로 인해 공영 미디어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조정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더 개악하고 고착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거나 발전시키는 일이 가능할까?

그 일을 위해선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첫째는 권력자에 부여한 공으로 공영 미디어들에 사장으로 투하된 자들의 퇴출이다. 둘째는 정권이 불법부당하게 자행한 방송장악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저항하다 징계당한 언론인들의 명예와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방송의 내적·외적 독립성과 공익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를 재건·보완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누리당 정권에게 그간 자신들이 저지른 미디어 공공성 파괴의 악행에 대해 반성할 일말의 가능성도 없음을 뼈저리게 목도해 왔다. 그 같은 과업들은 미디어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현 정권 하에서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 걸음은 그 과제들을 기꺼이 추진할 수 있는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질식사에 이른 민주주의를 회생시키는 선거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icoop](#)

아이쿱 생협만평

이 동 수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선옥 (기록노동자)

지난 2월 26일, 손해배상과 가압류(이하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손잡고>(www.sonjabgo.org)가 만들어졌다. 손잡고는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라는 뜻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행동을 벌이기 위한 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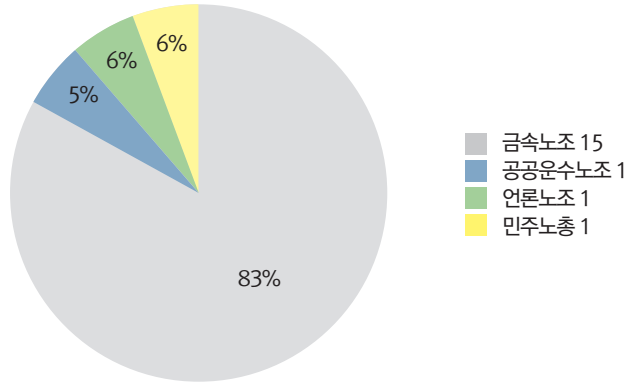
<손잡고>의 출범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준비 단계부터 언론은 이 문제를 크게 다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손잡고> 출범을 위한 제안자로 속속 들어갔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이어진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판결이 작용했다.

지난 연말 수원지방법원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2009년 77일간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량 정리해고 사태로 2010년 희망버스를 출발하게 했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도 59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90억 원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철도노조는 지난 연말 벌인 파업으로 116억 원의 가압류가 청구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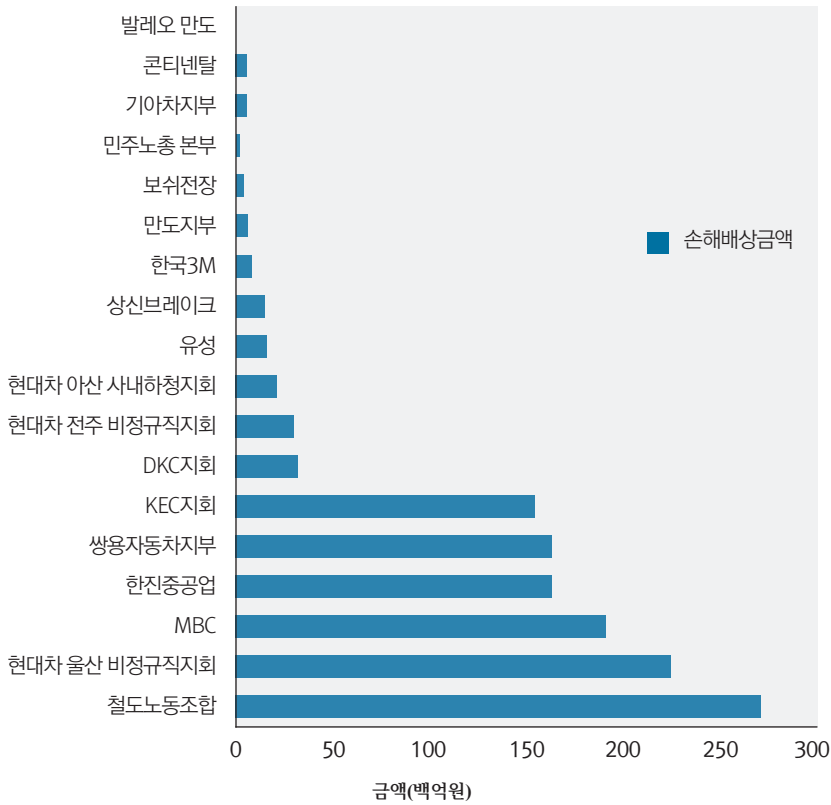
손해배상과 가압류 현황

2014년 2월 현재,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사업장 18곳을 포함해서 총 19개 노조가 기업과 정부가 걸어놓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청구액은 무려 1,690억 원이 넘는다. 가압류는 이와 별도로 18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손해배상 사업장 분포



사업장별 손해배상 금액



천억 원이 넘는 돈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변제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아무런 임금소득이 없는 해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그 가족들의 삶마저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희망퇴직자, 복직자, 연대한 시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간부까지 모조리 손해배상과 가압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파업 한 번 벌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역사

손배 가압류가 노동조합의 목을 죄고, 노동자 개인들을 고통스럽게 한 역사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두산중공업 노동조합 배달호의 죽음이 컸다. 독재정권 시대에는 주로 노동자의 인신을 구속하고, 공안문제로 접근해 형사적인 처벌 위주로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했다면, 독재정권 이후에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법과 손해배상과 가압류라는 민사법을 동시에 활용해 노동조합을 옥죄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어쩌면 자본 쪽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다.

자본과 노동 간의 문제였던 손배 가압류에서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로 등장한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다. 쌍용자동차와 유성기업은 ‘대한민국’인 원고의 대리로 경찰청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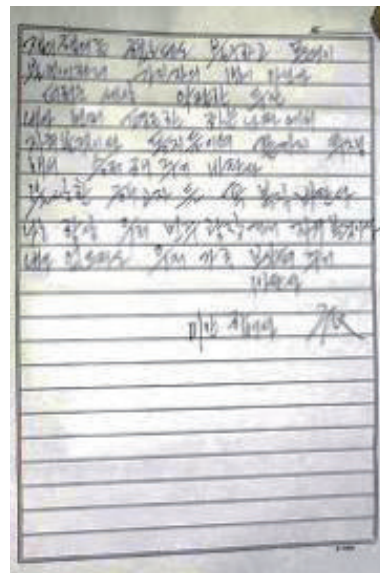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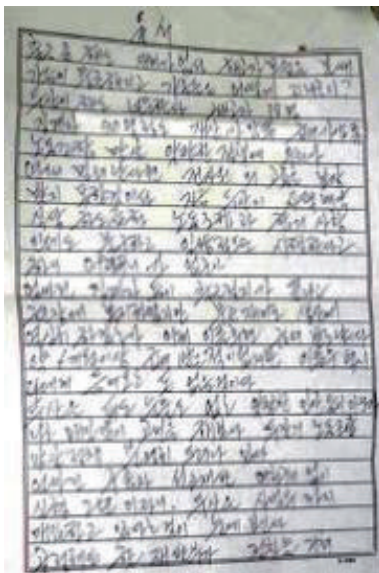
2003년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배달호는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같은 해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지회장도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로 구속해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며 크레인 위에서 목을 땀다.

배달호와 김주익의 죽음으로 손배 가압류는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다. 잔액 “0” 원인 통장 세 개를 남기고 간 배달호와, 135,080원이 찍힌 김주익의 월급명세서, 그리고 그들의 비극적인 자살은 당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사실상 임금소득이 전부인 노동자의 월급을 전액 가압류하는 것은 그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절절한 유서에서 그 고통이 가감 없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하고, 실질 생계수단인 임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가압류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두 노동자의 죽음이 다른 죽음들을 겨우 막아낸 것이다.



2003년 두산중공업노조 배달호의 유서

그러나 이런 움직임도 잠시, 2000년대 후반부터 손배 가압류는 다시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고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 양상도 소수 선진적인 노동운동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조합 간부 위주로 청구되던 것이, 노동조합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과 시민들한테까지 무차별로 남발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에게 대체인력 투입비용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하고, 흥익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사 측 직원들 식대와 술값까지 청구하는 등 청구 내용 또한 상식의 선을 넘고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교섭 타결로 파업을 마치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손배소송을 철회하던 관례도 깨지고, 타결과 무관하게 손배소송은 끝까지 진행해서 노조와 조합원을 압박하는 무기로 삼는다.

경제적인 압박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관계와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문제다. 금속노조 KEC는 노조를 탈퇴하면 손배소송을 취하해 주겠다는 회유로 조합원들을 분열시켜 민주노조를 파괴하였고, 학습지 노동자는 통장이 가압류되어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금속노조 산하 쌍용자동차와 유성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경찰이 직접 국가의 이름으로 손배 가압류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유성기업은 경찰의 손배 가압류로 조합원의 임금과 해고자의 퇴직금이 집행되고 있고, 쌍용자동차는 파업 당시 진압에 투입한 경찰 헬기 수리비까지 10억 원 가까운 돈을 청구했다. 포항에 있는 금속노조 산하 DKC지회는 사측의 직장폐쇄로 벌어진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26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로 10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조합원 25명 전원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매달 임금의 50%가 가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제조건: 1-3-0-0 고유번호: 8203134 성명: W F T
계좌번호: 104-01-0583051 지급은행: KUK MIN

소득내역	기본급	통영직수당	연속근수당	영유수당	지적·연구수당	상여지급률
	1,051,396	77,501				
공제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이근수당	년월차수당	기타	소득세
	72,333	650,461				1,651,591
세제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10,170	1,010		120,150	46,820	15,088
내역	장기저축	채형저축	채형기금	우리사주	노조비	근로복지기금
					23,249	207,000
비고	아파트	의료대	물품대	세탁비	세	보증보험료
비고	상조비	신용조합	미용금고	산대동축금	개인연금보험	
	300	302,824				
비고	근무일수	연차시간	이근시간	영유시간	전여년월차	수령액
	31500400	000100	000100	000100		4,135,088
비고					730,000	1,516,611

03 01 07 21

④ 錦進重工業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135,080원이 찍힌 故김주익의 월급명세서

2014년 2월 현재,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 걸린 손배 가압류 금액은 1,600억 원을 넘어섰다. 도저히 개인과 노동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은 손배 가압류가 영혼을 갉아먹는 느낌이라며 차라리 구속되는 편이 낫다고 말을 한다. 경제적인 압박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10년 전 김주익이 목을 맨 사업장인 한진중공업에서 젊은 노동자 최강서가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또 목숨을 끊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다시 나오고 있고, 언제 또 다른 목숨이 스러질지 알 수 없는 긴장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	2012. 12. 20 오후 7:00
유서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자들의	
칭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것 같다. 내가 못가진것이 한이된다.	
민주노조사수하라 손해배상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약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지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	
돈이 전부인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	

한진중공업 노조 최강서의 유서

35세, 한창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와 아내를 둔 노동자 최강서는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이라는 절망을 쏟아내고 생을 마감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민주노조로 돌아오라는 그의 절규처럼,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약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무너진 현실이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바뀌지 않고 있는 문제, 아니 어쩌면 더 가혹해진 현실 앞에서 또 어떤 노동자가 유서를 쓰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남발되는 까닭은

그렇다면 왜 이토록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현실에서 가능한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현행 법 제도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구조적으로 불법일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제3조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배상을 통해 파업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인 파업일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쟁의행위가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4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합법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 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며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은 사실상 대부분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든다. 기업이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그 주체가 불법이고, ‘철도민영화 반대’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의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쟁의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면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불법이 된다. 오직 자신의 임금이나 근로조건만을 위해 어떤 물리적인 행동도 없는 형태만이 합법이 되는데, 그런 파업에는 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파업이라는 비난이 따라 붙는다. 그리고 그런 합법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걸면 대부분 인정이 되어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근거로 작용한다.

대법원은 1991년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집단적인 작업의 거부, 즉 노무 제공의 거부라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민사상의 손해를 끼쳤는지 판단하지 않아도, 검·경찰과 기업은 일단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파업노동자들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거와 해산의 명분을 삼는다. 업무방해죄는 수십 년 동안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에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해왔다. 거기에 더해 가압류는 사용자가 청구하면 변론 없이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손배 가압류가 마구잡이로 남용되는 것이다.

2014년 2월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현황

사업장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금액	청구이유 변경 및 소송 인정액 반영한 금액	
쌍용자동차지부	302억	158억 15천만	28억 9천만
KEC지회	300억	156억 5천만	5천만
한진중공업	158억 1천만	158억 1천만	-
철도노동조합	313억 2천만	227억	116억
MBC	195억 1천만	195억 1천만	22억
유성	57억 5천만	13억 4천만	-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225억 6천만	225억 6천만	-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16억 7천만	16억 7천만	4천만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25억 6천만	25억 6천만	5천만
한국3M	2억 6천만	4억 9천5백만	4천 7백만
발레오만도	26억 5천만	1천 8십만	-
상신브레이크	10억	11억	4억 1천만
만도지부	30억	30억	-
DKC지회	26억	26억	10억
보쉬전장지회	2억 1천만	2억 1천만	-
콘티넨탈지회	3천만	3천만	-
기아차지부	3천 3백만	3천 3백만	-
계	1,691억 6천만	1,250억 9천만	182억 8천만

출처: 손잡고

사법부의 인식도 손배 가압류 문제가 남발되는 데 크게 작용한다.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이런 식의 남용은 줄어들 수 있다.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당장은 사법부가 신중하게 판단만 해줘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노동문제를 민법의 시각으로 판단한다.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을, 회사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민사적인 사건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다. 기업이 주장하는 손실액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몰이해와, 제도적인 교육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문제의 고유한 특성을 알지 못하는 사법부의 인식 때문이다.

헌법은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해당 쟁의행위가 기업에 어떤 불리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 이는 쟁의행위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이 집단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허용하는 유일한 조직이 노동조합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구축된 합리적인 질서다.

파업에 대해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들 대부분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일단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한다고 해도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그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들의 피해가 적고, 손실액에 대한 규정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파업 자체를 형벌로 규정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는 이미 1800년대에 사라졌다. 독일과 프랑스도 손해배상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손배 소송이 기각되기 때문에, 기업이 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한국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ILO는 “한국의 노동자와 그 단체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구성원들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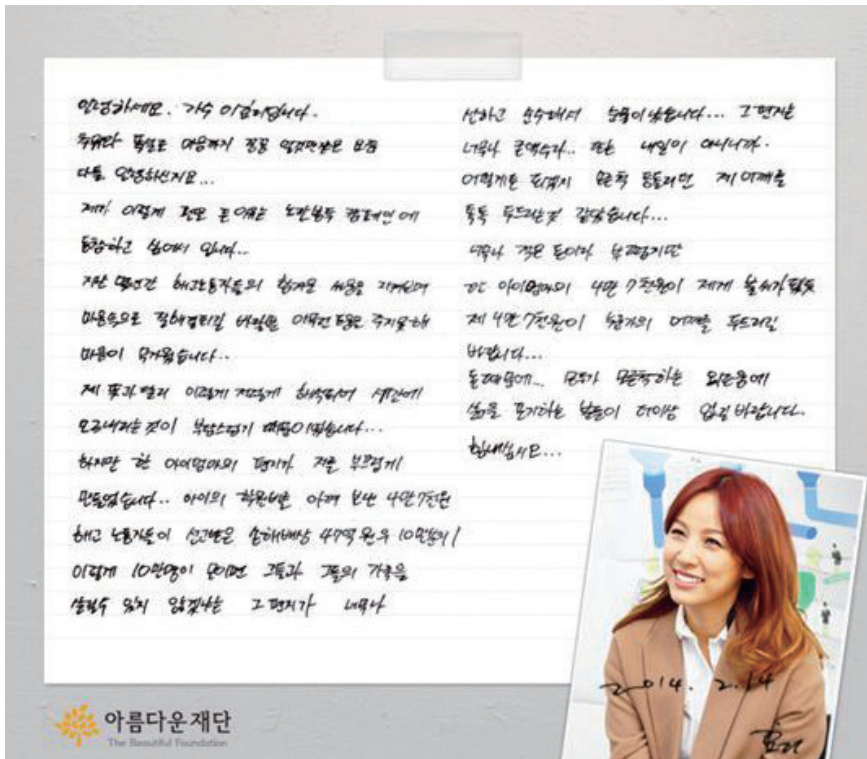
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한국의 손배 가압류 현실에 대해서도 “손배 가압류로 인한 파업권 제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다.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이런 현실에서 최근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대해 “단체교섭·쟁의행위와 직접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노조법 제2조 5항에 “경제적·사회적 권익 향상”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문구만으로도 상당수 공익 파업의 불법성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벌써부터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최근 출범한 <손잡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의 절박함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소식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 기사를 읽은 용인의 주부 배춘환씨는, 너무나 막막한 숫자이지만 십만 명이 4만 7천 원씩 부담한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지 않겠냐며 자기 몫의 돈을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시민들이 손배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모금에 동참하면서 아름다운 재단은 아예 손배 가압류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노란봉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배상액은 엄두를 못 낼 금액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4만 7천 원이라는 크지도, 적지도 않은 액수는 10만분의 1 정도의 몫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의식을 상징하는 액수가 되었다.

여기에 지난 2월 14일, 유명 가수 이효리 씨가 손수 쓴 손편지와 함께 4만 7천 원을 보내면서 모금은 급물살을 탔다. 2주 만에 4억 7천만 원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가 달성되는 기적이 벌어졌고, 다시 2차 모금에 돌입했다.



<손잡고>는 손배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본격행동에 나섰다. 법 제
 도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법률 개정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토
 론회,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돈 때문에... 모두가 모른척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 이
 상 없길 바란다”는 그녀의 편지처럼, 더 이상 손배 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
 동자들이 고립된 채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손배 가압류를 잡기 위해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고,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이다. [icoop](#)

밀양, 보통 사람들의 싸움을 기억하라!

희정 (르뽀작가)

이런 일이 있었음을 생각하라.
당신에게 이 말들을 전하니, 가슴에 새겨두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깨어날 때나
당신의 아이들에게 거둬 들려주라

<이것이 인간인가>의 서문 중

밀양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그 일들을 거둬 들려주어야 한다. 현재 밀양에는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일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일을 이후에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통행금지, 무리한 사법처리, 표적수사...

밀양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하다. 많은 언론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인권침해가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관심을 두길 포기했지만¹, 인권침해보고서가 이미 3차례나 나올 만큼 밀양에는 인권침해 사례들이 넘쳐난다.

공사가 재개된 10월에는 부상자가 31명에 가까웠다. 11월에 18명, 12월에 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환자 중 대다수가 예순이 훨씬 넘는 노인들이

¹ 물론 그보다 적은 수의 '많은' 언론이 꾸준히 밀양 송전탑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 이들은 모두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의해 부상을 입었다. 주민들은 한전 인부들은 보지 못한다. 한전의 공사 차량이 주민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송전탑 부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경찰이 해주기 때문에, 한전 인부들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할 일이 없다. 한전 차량이 지나가면 경찰들은 주민들을 감금하거나 길 밖으로 밀어낸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통행금지, 무리한 사법처리, 표적수사, 채증, 공권력의 폭력적 행사, 식별표시 및 복장 문제, 공무집행시 미고지, 집회금지 통고, 고압감을 목적으로 한 방문 금지, 외부세력 매도, 생필품 반입금지, 부적절한 응급치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지원 제한, 신체적 자유에 대한 모욕적 침해, 주민들에게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조롱과 폭력적 대우’². 이것이 일상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10월 공사가 강행된 후 반년 가까이 일이다. (물론 이전에도 몇 년에 걸쳐 한전 용역들에 의한 인권탄압이 있어 왔다.)

밀양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해보자. 그러나 최대한 자극적인 사건은 자제하고 일상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만을 이야기 할 것이다.

송전탑 132번 공사부지로 가는 길목, 장을 보고 마을로 돌아가려는 주민들의 통행마저 경찰은 금지했다. 주민들은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결국 주민 한 명이 실신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은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였으나, 40분이 지나도록 구급차는 오지 않았다.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진 주민은 오한에 떨어야 했다. 그녀가 응급실에 실려와 한 첫 마디는 “살고 싶지 않다”였다.

또 다른 이야기. 고답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공사차량 길목을 가로막고 농성을 했다. 주민들이 아침밥을 차리자, 경찰은 그 위로 소화기를 뿌

2 3차 밀양인권침해보고서 중

려 모닥불을 끄고 식사판을 엮어버렸다. 밥그릇들이 경찰들의 발에 차여 굴렀다. 분노한 주민들은 격렬히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8명이 응급 후송, 10명이 부상, 6명이 연행됐다.

다른 충돌 장소에서 한 노모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경찰을 붙잡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뿌리쳤고 노모의 손에 날카롭게 베인 상처가 났다. 노모와 주민들은 경찰이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지금 밀양 주민들 눈에 비친 경찰의 모습이었다.



주민들에게 경찰은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다. 경찰은 술한 ‘불법’ 운운의 협박을 하고 과도한 채증(증거 수집)을 한다. 주민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해도 심지어 삼삼오오 앉아 수다를 떨거나 밥을 먹는 동안에도 채증이 이루어진다. 법에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사복경찰이 개인 핸드폰을 통해 찍거나 ‘도촬(도둑 촬영)’에 가까운 채증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공사현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찰들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밀양에 연대하러 온 시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 또한 벌어지고 있다.

밀양 싸움에서 특이한 점은 ‘익명성이 보장된 경찰과 익명의 권리가 박탈된 주민(또는 연대자들)’이다. 밀양의 경찰들은 많은 수가 복면을 하고 있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도 구분 못 하게 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동복 상에 부착해야 한다’고 권고한 명찰 같은 것들은 요구할 자리조차 없다.

그에 반해 밀양주민들은 익명이 될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들은 앞서 언급했듯 농성장에서의 평화로운 일상마저 채증당한다. 경찰은 ‘00씨’라고 직접 이름을 반복해 부르며 마을 주민을 지목한다. “정00씨를 채증해” “김00씨 당신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통보가 일상이다. 특정인의 이름들을 부르며 불법이라 규정하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주민 대부분이 경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산 이들이다. 연행자가 늘어나고 경찰서에 항의 방문을 갈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이들이 읍내에 있는 경찰서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 평생 가도 한 번 찾을 일이 없었던 경찰서를 현행범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가게 된다. 가히 위협적이다. 경찰 조사라도 받고 나오면 그 뒤로는 농성장을 찾길 꺼려한다. 경찰이 취하는 방식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는 분명하다.

불법을 보호하는 공권력

그럼에도 경찰은 폭력과 협박이라 부를 행위를 함에 있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합법이고, 주민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불법을 저지르니 체포할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법 집행에 이르게 되기까지에는 술한 불법들이 있었다. 공사 자체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송

전탑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일은 생략되었다. 송전탑 건설에 관한 설명회는 소리소문없이 치뤄졌다. 송전탑이 부지로 선정될 상동, 산외, 단장, 부북 4개 면 주민들 중 설명회에 참가한 이들의 수는 1%도 되지 않는다.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이 낯 뜨겁다. 전선을 따라 방출되는 대용량의 전압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는 광활한 벌판에나 세워진다는 765kv 송전탑의 존재를 알게 되기까지 주민들이 생각한 송전탑은 길가의 전봇대와 다르지 않았다. 이후에도 주민이 인정하지 않은 급조된 마을 대표들이 송전탑 건설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한전과 체결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절차에만 정당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특정 땅에 송전탑을 짓고자, 땅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한전이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금으로 걸어두면 땅의 소유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박정희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을 들이밀며 합법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또한 송전탑 부지 공사에는 불법이 가득하다. 하루 만에 졸속으로 치른 환경영향평가조차 한전은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위반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헬기를 사용해 자재를 옮기는 공사부지는 13곳이다. 경찰은 불법 공사를 하는 한전의 공사에 조력하는 셈이다. 주민들을 향해 불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한전과 경찰의 ‘합법’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튼소리다. 경찰은 법 집행의 정당성이 있어서 주민들을 막는 것이 아니다. 농성장과 공사현장 길목에서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한 모습을 보자면, 한숨부터 나온다. 허리 꼬부라진 노인 일곱 여덟을 장정의 경찰 수십 명이 막고 있다. 할머니들이 의자에 앉아 버티면, 의자째 들어 길 밖으로 옮긴다. 가진 힘이 다르다. 넓혀 보자면 한전과 경찰, 아니

그로 대표되는 국가가 가진 힘과 주민들이 가진 물리적인 힘은 애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저쪽은 돈과 힘, 권력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들이다.

권력으로 그들은 인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였다. 그것이 때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주민들을 폭행해도, 사람을 사지를 들어 끌어내도, 무리하게 연행을 해도 국가를 등에 업은 한전과 경찰은 ‘합법’이다. 그 합법적인 폭력은 자신의 농장 인근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는 소식에 절망해 음독자살한 故 유한숙 씨의 분향소를 칼로 찢고 유가족에게 폭력을 가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에 비해 한참이나 보잘것없는, 농민들이 평생을 일궈온 땅 몇 마지기를 빼앗아 송전탑을 쌓아올린다. 송전탑과 발전소가 그들에게 벌여줄 이득을 기쁘게 계산하며 말이다. 송전탑 하나가 세워질 때 억 단위의 돈이 든다. 발전소 하나는 조 단위의 돈이다. 765kv 송전탑보다 훨씬 작은 154kv 송전탑을 짓는 데 있어 작은 공사 하나만 맡아도 건설업 자영업자는 복권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 없다고 했다. 그러니 큰 공사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게다가 전력산업은 복잡하고도 특정 기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폐쇄성을 취하기 쉬워, 높은 담장 뒤편에서 얼마쯤은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도 모를 일이다.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뭉친 이들을 우리는 ‘원전 마피아’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수익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데, 송전탑을 막으며 평생 일군 재산과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버둥거리는 노인들은 거치적거릴 뿐이다. 밀양 주민들의 옳음을 믿어 연대를 오는 이들도 역시나 성가시다. 방해와 거치적거림을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치워버린다. 밀양에 경찰 3천 명이 들어서게 된다.

그리하여 밀양에서는 술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울부짖음, 노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일상의 안온한 삶, 사람들이 상식이라 믿고 산 정당함 등은 저들의 이익 앞에서 너무도 작게 평가된다. 그래서 그 소중함이 박탈당하고 존엄이 모멸당한다.

밀양 주민들은 분노하는 만큼 더불어 당혹해한다. 그들에게 ‘나라’란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나라에서 하는 일은 못 막는다”며 체념하는 동시에 용인했다. 나라가 자신들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깨달은 후에도 그들은 “설마 나랏일을 공정하게 안 하겠냐”며 국가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경찰이 지켜주는 한전의 공사 차량을 막고 외친다.

“이게 법이나, 개새끼들아.”

국가와 법의 실체를 깨달은 밀양 주민들이 이제 시민으로서의 불복종을 하기로 선언한다. 이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채 ‘개새끼들’에 집중한 경찰은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향해 ‘불법’이라 경고한다. 이들을 공권력이라는 힘으로 감금하고 연행한다.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폭력

멀리 어느 도시에서, 우리는 경찰의 폭력을 불안한 시선으로 본다. 밀양 할머니들은 죽겠다면서 목에 밧줄을 걸고 경찰을 맨몸으로 막아보겠다고 옷을 벗는다. 눈물 콧물 흘리는 모습이 보기 편할 리 없다. 누군가가 흘리는 불편한 눈물에 관심을 두기에는 우리의 일상은 꽤나 딱딱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밀양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애써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밀양에서는 힘을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보통 사람’들이 모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탑 반대 세력이라 불리는 밀양 주민의 집에는 우리가 가진 것과 흡사한 사진들이 걸려 있다. 갓 돌 지난 손자의 사진도, 자녀들의 결혼식 사진도 걸려 있다. 젊었던 한때, 자식들의 어린 시절이 나란히 걸리기도 한다. 때로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은 누군가의 사진도 존재한다. 전자파 아래에서 가축은 새끼를 배지 못하고, 농작물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람은 암에 걸린다는 그 무서운 소문을 안고 온 송전탑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주민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닮았다. 우리가 저들처럼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을 무한하게 둔다면, 그들이 힘을 앞세워 부리는 횡포를 손 놓고 보고만 있는다면,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밀양 주민들의 사진첩에는 이제 송전탑 반대 세력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추가되었다. ‘765kv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사람들이 웃는다. 권력에 의해 빼앗긴 자신의 농토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으로. [icoop](#)



사진 출처 :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조합원이 주인 되는 방송, 4월1일 시작합니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일단 지하 카페에서 뵙죠.”

국민TV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하자 김용민 PD가 보내온 답변이었다. ‘스튜디오가 아니고 웬 카페?’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울 합정동 인근 국민TV가 세들어 있는 건물로 향했다. 김PD가 말한 카페는 이 건물 지하에 있었다. ‘국민카페-ON AIR’라는 상호가 붙어 있다. 알고 보니 국민TV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다.



국민TV 신입사원들이 건물 지하에 있는 조합 카페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 맨 왼쪽이 노종면 TF단장.

내부에 들어서니 색다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일단 북카페 형태로 꾸며진 카페 정면에 소극장 무대 같은 공간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스튜디오 하나가 있는 것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카페에 있는 손님들이 내부를

현히 들여다볼 수 있게끔 오픈된 구조로 만들어진 스튜디오다. “저긴 뭐 하는 데죠?” 카페에서 음료를 파는 정현진씨에게 물으니 “조합원 대상으로 공개 방송을 할 때 쓰는 공간”이라는 답변이 되 돌아온다. 알고 보니 정씨 또한 국민TV 조합원. 국민TV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다 과거 카페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게 인연이 되어 조합 카페 직원이 되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평일 낮 시간인데도 카페 테이블 10여 개가 꽉 차 있다는 사실이다. ‘직장인이 몰려들 점심시간도 아니고, 변화가에 있는 카페도 아닌데 웬일일까?’ 싶던 차에 김용민 PD가 나타나 궁금증을 풀어 준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신입사원이에요. 4월 1일 TV 개국을 앞두고 제작 인력 22명을 새로 뽑았는데, 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이 건물 9층에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설 텐데 지금은 한창 내부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 마칠 때까지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국민TV가 <노종면 방송사단>을 모집합니다.

발달영상 PD, 뉴스타파 앵커를 지난 노종면 기자와 함께 국민TV의 개국을 이끌어 갈 인재를 찾습니다.

학력과 학점 등 가상 언론이 요구하는 이온바 스펙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방송제작자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인성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형 방식 및 일정

모집 분야

- 뉴스제작 PD, 보도 기자, 사회, 정치, 문화, 연예, 스포츠 기자 등
- 촬영 PD, 편집 PD, 그래픽, 디자인, 영상 제작 등
- 앵커, 리포터, 사회, 정치, 문화, 연예, 스포츠 리포터 등
- 기획, 편집, 사회, 정치, 문화, 연예, 스포츠 기획 등
- 그래픽, 디자인, 영상 제작 등
- 앵커, 리포터, 사회, 정치, 문화, 연예, 스포츠 앵커 등

국민TV는 오는 4월1일 TV방송을 개국한다. 사진은 지난 연말에 나간 국민TV 신입사원 모집공고.

‘주식회사파’와 ‘협동조합파’간의 갈등

4월 1일 TV방송 개국. 이로써 국민TV는 또 한 번 큰 산을 넘는다.

2012년 대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48% 중 일부는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을 ‘보수 과잉의 기울어진 매체 균형’에서 찾았다. 특히 공중파 TV나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편들면서 시청자의 눈과 귀를 흐려놓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매체 균형을 바로잡을 대안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 초창기만 해도 이것이 현실이 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대선이 끝나고 일 주일여만인 12월 26일, 시민사회인사 14명이 모이면서부터다. 이들이 ‘대안방송 개국을 위한 준비 모임’을 꾸리면서 실제로 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단 방송이 생길 것으로 믿고 무조건 성금부터 보내겠다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2013년 3월 2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설립준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가졌을 때, 이미 약속된 출자금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왜 협동조합이었을까? 준비모임부터 참여해 현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이사직을 맡고 있는 서영석씨(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논의 초기만 해도 ‘주식회사파’와 ‘협동조합파’간에 갈등이 엄청났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내세운 가장 주된 논리는 자본 조달의 필요성이었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방송, 사주와 광고주로부터 독립된 방송, 다 좋다. 그렇지만 방송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텐데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 자본금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간의 관행을 감안하면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 2011년 개국 당시 종합편성채널의 납입 자본금은 3,000억~4,000억 원 수준이었다.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 자본금도 600억 원대에 이르렀다.

이에 맞서 협동조합파들은 미디어 트렌드가 변했음을 들고 나왔다. 공중파TV 방식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던 과거에는 방송 하나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디지털·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SNS 등 소셜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오늘날에는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국민TV가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조합원이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꿈수다>, <나는 꿈사리다> 등으로 팟캐스트 열풍을 일으킨 주역 중 한 사람이자, 국민TV 개국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용민 PD는 “2012년 <나는 꿈사리다>를 제작하면서 협동조합을 시리즈로 다루게 됐는데 그때 협동조합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됐다. 갑이 을을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경제구조를 허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우리가 새로 만들려는 게 권력뿐 아니라 광고주의 입김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언론이라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라디오 ‘모델하우스’로 조합원 이탈을 막다

그렇게 협동조합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은 정리됐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준비모임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협동조합 실무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로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이제 막 통과된 시점인데다,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게 워낙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 도와줄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가 속출했다. 단적인 예가 발기인 모집이었다. “당시만 해도 사람을 많이 모으면 무조건 좋은 걸로 알았다”고 김 PD는 회고했다. 그렇게 모인 발기인이 1,004명.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감 등 필요 서류를 받아내는 작업부터가 쉽지 않았다. 창립 총회 또한 골칫거리였다. 규정상 창립총회에는 발기인 절반 이상이 출석해

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500명 이상 들어갈 총회 장소 구하는 것도 큰일이었다. “발기인은 최소한으로 하고, 창립총회를 치른 다음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걸 몰랐다”고 김 PD는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출자금이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창립총회 당시 약정된 출자금은 10억 원이 넘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약정된 금액일 뿐이었다. 정식으로 출자금을 받으려면 협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밟는 데만 40여 일이 걸렸다. 방송에 필요한 인력을 불러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TV를 둘러싼 온갖 흑색선전이 떠돌기 시작했다. “저래서야 어떻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 “결국에는 국민들이 호주머니 털어 모은 돈을 저 사람들이 다 날리고 말 거다” 등등.

그때 떠올린 것이 ‘모델하우스 모형’이었다고 김용민 PD는 말한다. “아파트를 짓기 전 미리 모델하우스를 통해 어떤 집이 될지 보여주지 않나. 그런 식으로 국민TV 또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 것인지 미리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2013년 4월 1일,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국민TV 라디오 방송이다. TV에 앞서 라디오 방송이 맛보기로 먼저 나가게 된 셈이다. 라디오 제작 인력은 불과 6명. 그럼에도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방송체제를 밀고 나갔다. 두 달 뒤에는 6명 인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방송시간을 18시간으로 6시간 더 늘렸다. 김용민 PD, 서영석 이사, 조상운 사무국장(전 <국민일보> 기자) 등 베테랑 언론인 출신이 주축이 돼 라디오 개국을 이끌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또 라디오로 방송된 콘텐츠가 재가공돼 팟캐스트로 유통되면서 국민TV 라디오를 즐겨 찾는 청취층도 늘기 시작했다. 화제작도 생겨났다. 팟캐스트 전문 포털인 ‘팟빵’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노종면의 뉴스바>(현재는 <조상운의 뉴스바>) <서영석의 라디오비평> 등 국민TV에서 제작·방송한 프로그램이 인기 순위 10위권 내에 포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중에는 편당 20만 명 이상

청취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국민TV 측은 밝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가 서서히 쌓이게 된 것 같다고 서영석 이사는 말한다. 신규 조합원 숫자도 불어나기 시작했다. 2014년 2월 25일 현재 국민TV 조합원 수는 21,921명. 출자금 총액은 36억 6,630만 원에 이른다. 서 이사는 “TV방송을 개국하고 나면 월 조합비도 걷을 계획이다. 조합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놓고 현재 조합원 간에 난상토론을 벌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YTN 해직기자인 노종면씨가 국민TV에 합류하면서 조합원 증가세에 더 탄력이 붙었다고 한다. “전문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방송인이 합류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TV 개국이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것 같다. 지금도 하루 평균 50명 이상 조합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종면 기자는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 <노종면의 뉴스바>로 신고식을 치른 데 이어 현재 국민TV 방송 개국을 위한 TF(Task Force)단장을 맡고 있다.

소비자가 참여한 언론 협동조합은 유례 드물어

오는 4월 1일, 첫 TV방송을 송출하게 되면 국민TV는 협동조합 언론사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국내에는 협동조합 언론사가 여럿 생겨났다. 지난해 5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인터넷 언론 <프레스리안>을 비롯해 지역 풀뿌리 언론인 <순천광장신문>(전남 순천), <느티나무 통신>(충북 괴산), <콩나물신문>(경기 부천) 등이 그것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학보를 발행하겠다는 대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이중 방송을 하겠다는 협동조합 언론사는 국민TV가 유일하다(비슷한 시기 탐사보도 전문 채널을 표방한 <뉴스타파>가 탄생했지만, <뉴스타파>는 협동조합이 아닌 비영리 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도 국민TV는 흔치 않은 사례다. 지난해 7월 <언론분야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라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탈리아

아 언론인 람베르토 마초티 씨는, 자기네 나라의 경우 650여 개에 달하는 언론·출판 협동조합이 활동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여기에 속한 조합원 4천여 명 대부분은 기자 또는 출판 편집자 신분이다.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AP통신사 또한 기본적으로는 뉴스 생산자(1400여 개 지역 언론사)가 조합원이다. 그런 만큼 국민TV처럼 뉴스 소비자가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해 협동조합을 만든 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셈이다.

물론 소비자가 참여한 언론 협동조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나라 언론 협동조합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기반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협력대 교수는 말했다. 이를테면 미국에 사는 이슬람권 이민자들이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슬람어 방송을 송출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 교수는 “국민TV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 미디어를 지향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대중 미디어에 협동조합이라는 옷이 잘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언론 협동조합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밖에도 여럿이다. 일단 협동조합으로 언론사를 운영하기에는 조합 운영에 따르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TV나 <프레스리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와 조합원 관리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대안언론으로서 공정·심층 보도를 통해 매체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는 한편, 협동조합답게 조합원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조직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부담을 동시에 떠안기에는 이들 협동조합 언론사의 인력이나 자본구조가 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경영상 어려움도 감지된다. 언론사의 주요 수입은 판매와 광고 양대 부문에서 발생한다. 특히 광고 부문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것이 한국 언론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생겨난 협동조합 언론사의 경우 광고 매출이 극히 미미하다는 게 공통점이다. 광고 영업이 약한데다 광고주 또한 이들을 꺼리기 때문이다. 국민TV의 경우 그나마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앞뒤에 붙인 광고가 늘면서 초창기 제로(0)나 다름없던 광고 수

익이 월 2천만 원 안팎까지 상승했다는 평가다. “조합원이 직접 기른 과일, 배추 등 농산물 직거래 광고가 특히 효과가 좋은 편이다. 국민TV 조합원이라는 정서적 동질감이 강한 만큼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 조합원이 운영하는 가게는 믿고 이용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김용민 PD는 말했다.

편집권 독립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편집권 독립은 언론 자유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 때문에 국민TV나 프레시안 공히 협동조합 정관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을 못 박고 있다. 조합원으로 구성된 독자 위원회나 편집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되 매체의 최종 편집 방향은 편집국 구성원이 결정하며, 편집권을 행사하는 최종 권한은 편집국장에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언론사의 한 관계자는 “목소리 큰 조합원이 편향된 여론을 주도할 우려는 언제든지 있다”고 말했다. 갈수록 진영 논리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의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진다. 최악의 경우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실었다며 조합을 탈퇴할 테니 출자금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나오는 조합원이 없으란 법도 없다. “솔직히 목소리 큰 몇몇 조합원이 어느 한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면 편집국도 일정하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는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가뜰이나 국민TV는 초창기부터 여러 차례 편향성 시비에 휘말린 바



국민TV는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과 조합비로 운영된다. 2월말 현재 조합원은 2만 2천명 수준이다.

있다. 이른바 친노무현 인사들이 이사진과 출연진에 다수 포진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 5만 명이면 안정적인 독립언론 가능’

그러나 이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언론사가 갖는 강점 또한 뚜렷하다고 국민TV 서영석 이사는 말했다. 일단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과 조합비가 언론사 운영의 근간이 되는 만큼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언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협동조합 언론사에서 일하는 한 기자는 “메이저 언론에 비하면 비록 보수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소위 (광고로) 옛 바뀔 먹는 기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곳 기자들의 긍지”라고 말했다. 단, 현재 수준의 출자금과 조합비만으로는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고민이다. “조합원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 명 수준은 돼야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조합원 배가 운동을 벌이는 게 급선무다”라고 김용민 PD는 말했다. <프레시안> 또한 현재 2,700명 수준인 조합원 숫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2013년 3월 3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창립총회가 열렸다. 당시 약정 출자금은 10억 9천만 원 가량이었다.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또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판단한다. 물론 이들 언론사 또한 사업체인 이상 신속한 경영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이럴 때면 협동조합 특유의 더딘 의사결정 구조가 자칫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논의 진행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 제반 상황을 더 꼼꼼히 따져 책임 경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서영석 이사는 말했다. 자신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순간적인 독단으로 신사업 구상 등을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일이 있었는데, 협동조합에서는 그럴 위험이 훨씬 적어지더라는 것이다.

다만 언론으로서의 정체성과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는 여전히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당장 TV 개국을 앞두고도 조합 내부에서 이와 관련한 상징적인 논쟁이 대두했다. TV 생방송을 비조합원에게 개방하느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그것이다. 4월 1일 국민TV가 일단 선보이려 하는 것은 <뉴스K>라는 한 시간짜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다. 평일 오후 9시~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방송을 내보낸다. 그런데 이를 비조합원도 볼 수 있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비조합원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측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게 함으로써 매체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조합원 편익이 우선이라고 반박한다. 노종면 TF단장은 “보다 많은 사람이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다. 조합원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TV 형태로 생방송을 시청하고, 비조합원은 오디오 형태로 방송을 듣게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도 뉴스를 확산시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편에서는 작용했다. 생방송이 끝난 뒤로는 이들 뉴스 콘텐츠를 인터넷과 모바일에 모두 공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짧은 층의 경우 생방송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뉴스K>와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JTBC <뉴스9>도

본방보다 본방 이후 인터넷이나 팟캐스트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안다”라고 국민TV 관계자는 말했다. 생방송 개방 범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TV 측은 조합원들의 토론 절차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TV는 <뉴스K> 제작 과정에 일반 조합원이 참여하게 한 다든가, 생방송 도중 조합원들이 보내온 시사퀴즈를 뉴스 하단에 흘려보내는 아이디어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언론 환경에 놓여 있는 지방 조합원들을 위해 몇몇 거점도시에 팟캐스트 방송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모두가 ‘조합원이 주인 되는 방송’이라는 미디어 협동조합 고유의 가치를 세워나가기 위한 나름의 고군분투다.

언론으로서건 협동조합으로서건 현재로서 국민TV 성공의 관건은 신뢰할 만한 방송으로 자리를 잡느냐이다. 2월 17일 조합원을 상대로 한 국민TV 개국 설명회에 참여한 조합원 김아무개씨(43)는 “요즘 보면 진영 논리에 빠진 언론이 많다. 제작진이 정한 아이템과 프레임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려는 듯한 언론도 많다. 국민TV는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단장은 “소위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보도 방향을 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용민 PD 또한 특정 청취층을 겨냥한 매체 특성상 ‘경향성과 편향성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었던’ 라디오와 달리 텔레비전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같이, 그리고 기적처럼 새로운 TV뉴스를 꼭 선보이겠다”던 이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확인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icoop](#)

바나나를 원하는 '그들'과 '우리'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 바나나』를 읽고

이웅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며칠 전, 바나나가 우리들의 식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마침 최근까지 공정무역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공정무역에서 바나나가 갖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된 터라 비상한 관심이 갔다.

유수 언론들이 지적인 ‘바나나 종말’의 이유는 바나나 곰팡이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퍼졌다는 것에 있다.

사실 바나나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세기 초, 남아메리카에서 ‘파나마병’ 곰팡이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종 바나나보다 우수한 맛과 크기를 자랑했던 그로미셸 종 바나나가 식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세균을 토렛이 보여주는 현미경처럼,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 바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매우 심각하고 위급한 문제를 목도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인간이 재배한 것 중 가장 골치 아픈 농작물이자 가장 모순적인 과일이 바나나라고 말한다. 더불어 이 책은 바나나에 투영된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바나나를 원하는 ‘그들’

저자는 오늘날 바나나를 취급하는 다국적 기업¹의 초기 상황인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바나나의 대중성과 상품 가능성을 파악한 당시 기업들은 유통기한이 짧고 물류가 복잡한 바나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랜테이션 생산방식을 취한다. 열대우림을 밀고 대규모 살충제 살포가 시작되면서 건장한 청년들마저 픽픽 쓰러져갔지만, 오히려 내성이 생긴 해충은 죽지 않아 폐해는 더 심각해졌다. 회사는 더 강한 농약을 개발해 뿌렸다. 바나나 농장의 고통은 남미지역에 관련한 여러 문학작품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1950년대, 과테말라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바나나 농장의 통제권을 두고 다국적 기업과 갈등하다 전복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고통과 아픔의 끝은 어디일까?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1 Dole(미국), Chiquita(미국), Del Monte(미국), Fyffes(아일랜드)는 약 7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파나마병’이 상륙하자, 국가기관을 전복시켰던 다국적 기업의 위용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다국적 기업은 남미대륙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수출에 적합한 새로운 바나나종을 찾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다. 그 이유는 모두 복제이기 때문이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대량생산을 위해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모두 같기 때문에 하나가 오염되면 금세 전체가 오염되어 버린다. 이제 파나마병이 아시아를 덮쳤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났다.

바나나를 원하는 '우리'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또 다른 대륙을 찾아 떠나야 할까? 수출에 적합한 새로운 바나나종을 찾아야 할까? 저자는 그로미셸이나 캐번디시와 같은 바나나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파나마병은 남미대륙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퍼져 탈출구가 없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생명공학 연구를 통한 품종 개량이다. 그리고 공정무역이다. 끝으로 소비자 의식을 강조한다. 파멸을 부르는 상품에 대한 소비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변화를 취할 수 있다.

바나나에는 인간의 양면성이 집약되어 있다. 바나나를 원하는 양 극단에 '그들'과 '우리'가 있다. 각각은 '탐욕'과 '지속가능'을 상징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양 극단의 중간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바나나는 오늘도 우리의 식탁에서 탐욕의 절제를 성토했고 있다. 바나나가 멸종될까? 바나나가 사라져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까? 어쩌면 바나나의 종말은 인류를 향한 최후의 경고일지 모른다. 지금이 멈출 때라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고…… [icoop](#)

사회적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가 되다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유럽과 미국에서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의 규모와 활동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어떤 영역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정도로 그 성장이 눈부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의 돌파구로 삼고자 하는 지자체,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성장의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진영

202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체’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세운 협동조합 진영은 복지, 분배가 강조되도록 성장의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ICA 노동자협동조합 부문의 CICOPA는 “협동조합 기업과 연구 분야는 성장과 GDP의 새로운 정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지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협동조합기업의 성장을 평가하는데 적당하지 않으며 정확한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DP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장기준지표는 불평등, 지속가능성 및 환경·사회적 문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09년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더 나은 성장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GDP는 복지나 공평한 시장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아니라고 일갈하였다. 이번 CICOPA의 보고서는 GDP의 빈약한 측정이 오히려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그의 이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를 반영한 성장 지표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단순하게 금융, 경제 영역에 관련된 1차원적인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 진영은 존엄, 연대와 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사회적 가치를 근거로 성장기준지표를 재정립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정부, 지자체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에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미국 정부, 농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기금을 조성하다

미국 정부는 협동조합 성장을 통한 농업 발전을 위해 34개의 지역 조직에 6백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톰 빌색(Tom Vilsack) 농무장관은 농업협동조합 및 비영리기관에 이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농촌 지역사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장, 발전의 기회를 증대하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기금이 새로운 식량, 농업 그리고 일자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촌협동조합과 공동소유사업 성장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기금은 미국 농무부 농촌협동조합개발보조금(RCDG)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그룹이나 고등교육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기금 수령 조직 중 하나인 인디애나협동조합개발센터는 20만 달러(약 2억 원)를 지역 생산품 구매 프로젝트인 ‘나의 지역 인디애나(My local Indiana)’를 위한 식품허브(food hub)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노스다코타주의 커먼기업개발협동조합(CEDC)은 20만 달러(약 2억 원)를 지역 생산물 가공, 저장 및 공급 협동조합 설립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생산자 지원과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대를 위해 관련 협동조합과 사업개발기관에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웨스턴일리노이대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바이오 기반 상품 연구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대학 내 일리노이농촌문제연구소(IIRA)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바이오 기반 상품, 지역 생산품과 같이 새로운 시장에 협동조합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09년부터 실

시한 RCDG프로그램을 통해 약 3천 개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총 3천3백 달러(약 350억 원)를 지원받았다.

노동자협동조합 촉진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경제법을 승인한 프랑스 상원

노동자협동조합 성장을 도모할 새로운 사회적경제법이 지난 11월 7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몇 달 내에 프랑스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에 인수될 경우 노동자들이 사전에 이를 통보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이들이 직접 기업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는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있기에 이 법을 통해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권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기업 인수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직원 50인 이하 기업은 최소한 2개월 전에 기업 매수에 관한 의도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유주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기업 인수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상원의원은 또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협동조합개발기금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승인하였는데, 이 법은 외부투자자의 지분을 노동자들이 매입하고자 할 때 노동자 적립기금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자들의 권한과 능력을 강화하여 이들이 성공 가능한 기업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장관 브누아 아몽(Benoît Hamon) 장관은 매년 기업 매각으로 5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를 노동자협동조합 촉진을 통해 대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유럽의 협동조합

CECOP-CICOP와 Confcooperative-Federsolidarietà가 함께 주최한 ‘협동조합을 통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컨퍼런스에서 EU 고용복지 집행위원

인 라즐로 안도르(László Andor)는 협동조합이 EU국가 취약계층에게 약 40,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이민자, 소수집단 및 전과자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주류경제에 새로운 비전과 방식을 가져오고 있다. 취약계층이 가정의 테두리 밖에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지원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강력한 사회적 통합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고용, 혁신, 교육 및 사회적 통합이라는 유럽 2020 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협동조합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실무반을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협동조합이 일반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EU와 모든 회원국에 법적·행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수준 및 변화, 가정의 실제 총 실질 소득과 노동자 인구의 빈곤률 및 차별대우를 측정하고 위한 새로운 고용 및 사회적 점수표 마련에 돌입하였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확산을 위한 지자체-협동조합 간 협력 증가

국제노동기구 ILO는 에너지 생산, 공급 및 소비에 관한 다양한 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4ALL)’를 위한 이들의 공헌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2%가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기부여, 저비용 목표, 합리적인 가격,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주요 강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ILO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영역의 토대부터 바뀌어가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업인 협동조합은 지역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추구하며 지역 전기 시스템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서는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이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시작은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 관련법이다. 1990년에 실시된 전력매입법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우대의 내용을 담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법(RESEA)’으로 2000년 4월 1일에 대체되었다. 또한, 2008년 통과된 재생 가능한 난방을 위한 법안은 주거용 신축 건물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였으며 2010년에는 기존의 주거용 건물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독일의 사례처럼 에너지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한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NRECA는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제정 및 정책 대화의 장에도 참여하며 대중인식증진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EU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재생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대출 서비스, 보조금 및 장려금 프로그램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과 협동조합과 정부, 지자체 사이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에너지 협동조합 성장,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icoop](#)

독일의 윈데(Jühnde) 바이오에너지 마을

독일 니더작센주의 남부에 위치한 윈데 마을은 마을 전체가 기존의 화석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 가능한 탄소중립적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독일에서도 첫 번째 사례이다. 바이오매스는 바

이오가스로 운영되는 CHP플랜트에서 에너지로 전환된다. 겨울 동안 필요한 연료에 대비해 우드칩난방시스템도 도입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주민들은 승인신청을 거쳐 투자목적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바이오에너지 시스템과 지역난방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였다. 이 마을은 2004년도에 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지역 사람들이 바이오에너지 시스템 운영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협동조합 모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윈데 모델에서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협동조합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이 계획단계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동안 필수 조건이었던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은 마을 주민 사이에 새로운 방향, 공동의 목적,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오늘날 마을 성인인구의 70% 이상이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며, 최소 1,500유로(약 2백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있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간도서

번호	제 목	발행년도
1	연구보고서〈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 만족도 조사〉	2014
2	『진짜 가격은 얼마입니까? 2013』	2014
3	연구보고서〈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 생협을 대상으로〉	2013
4	『로치테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 역사와 사람들』 (조지 제이콥 홀리오크 저, 정광민 옮김)	2013
5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 미니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니시무라 이치로 저, 연리지 옮김)	2013
6	연구보고서〈201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3
7	“제 28회 후속교육 자료집 〈공정무역을 통한 인권회복 활동〉”	2013
8	“제 29회 포럼 자료집 〈아이쿱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2013
9	“제 29회 후속교육 자료집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2013
10	“제 30회 포럼 자료집 〈한일 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13
11	연구보고서〈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2013
12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획, 서울특별시 발행)	2013
13	『진짜 가격은 얼마입니까?』(e-book)	2013
14	“제 28회 포럼 자료집 〈농지가격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
15	제 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3
16	제 5회 『2012윤리적소비 공모전』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17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012
18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2012
19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2012
20	『후쿠이생협의 도전』(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2012
21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오리토이사오 글, 와카니시 케이코 일러스트, 이은선 옮김)	2012
2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사이토 요시아키 지음, 다나가 히로시 옮김)	2012
23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와카츠키 타케유키 지음, 이은선 옮김)	2012
24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 26회 포럼 자료집 〈일본생협매장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2012
25	“제 27회 포럼자료집〈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2012
26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자료집〈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27	제 4회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 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28	제 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2
29	“제 26회 후속교육 자료집 〈ICA 총회 및 해외 협동조합 연수 보고회〉”	2012
30	“제 25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 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아이쿱생협 경험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2012
31	제 24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32	“제 25회 포럼 자료집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2
33	제 24회 포럼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34	“제 23회 포럼 자료집 〈아이쿱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2011

35	"제 22회 포럼 자료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2011
36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1-01 <iCOOP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2011
37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1-0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2011
38	iCOOP협동조합연구소 번역서 2011-0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생협-의 동향>	2011
39	iCOOP협동조합연구소 번역서 2011-0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 회계 문제>	2011
40	"제 19회 포럼 자료집 <아이쿱 직원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2011
41	"제 20회포럼자료집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2011
42	제 21 회 포럼 자료집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2011
43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2011
44	"제 23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2011
45	"제 20회 후속교육 자료집 <북자국가스웨덴에대한이해>"	2011
46	제 16회 후속교육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 보고>	2011
47	제 14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 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1
48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2011
49	『뒤영밭은 어떻게 나는가』(이바노 바르베리니 지음, 김형미 외 2인 옮김)	2011
50	『새로운 생협운동의 미래』(신성식 지음)	2011
51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2010
52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2010
53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3 <생협 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2010
54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4 <2009 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0
55	"제 18회 포럼 자료집 <아이쿱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2010
56	제 17회 포럼 자료집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2010
57	제 16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자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2010
58	제 15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2010
59	"제 14회포럼자료집 <생협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0
60	제 13회 포럼 자료집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2010
61	제 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0
62	'일본어 자료 번역모임'의 활동자료집	2010
63	'일본어 자료 번역모임'의 활동자료집	2010
64	"제 13회 후속교육 자료집 <2010년 유럽영국문드라곤 방문 보고회>"	2010
65	"제 12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법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0
66	iCOOP생협 ICA가입 기념 심포지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과 생협의 사회적 책임>	2009
67	제 2회 윤리적 소비 논문 쓰기 공모전 자료집 <논문부분 수상자 논문집>	2009
68	제 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9

69	우리밀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생산과 소비의 상생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2009
70	제 12회 포럼 자료집 〈생협의 노동과 임금〉	2009
71	제 11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9
72	『생활속의 협동』(오사와 마리 편저, iCOOP협동조합연구소 옮김)	2009
73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iCOOP협동조합연구소 · 한겨레 경제연구소 옮김)	2009
74	"제 9회 후속교육 자료집 〈한국의 조세 · 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2009
75	제 8회 포럼 자료집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2008
76	제 9회 포럼 자료집 〈광우병, 촛불 정국에서 생활 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2008
77	"제 10회 포럼 자료집 〈람사르총회와 논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2008
78	제 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분 수상작 자료집〉	2008
79	제 4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8
80	『협동, 생활의 윤리』(iCOOP생협연대 지음)	2008
81	"제 6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에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2008
82	제 4회 포럼 자료집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2007
83	제 5회 포럼 자료집 〈우리 밀 생산과 소비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2007
84	"제 6회 포럼 자료집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 경제와 생협운동〉"	2007
85	제 7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2007
86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2007
87	〈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2007
88	iCOOP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 -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2007
89	i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일 생협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
90	제 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7
91	"제 4회 후속교육 자료집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2007
92	제 1회 포럼 자료집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2006
93	제 2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2006
94	제 3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	2006
95	출판기념 토론회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2006
96	제 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97	제 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98	"제 1회 후속교육 자료집 〈제 1기 아카데미 후속교육〉"	2006
99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일본 21세기 코프연구센터 역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옮김)	2006
100	『새로운 생협운동』(한국 생협연대 지음)	2002
101	『서기2000년의 협동조합(1980년 모스크바CA레이들로그서)』 (김동희 역,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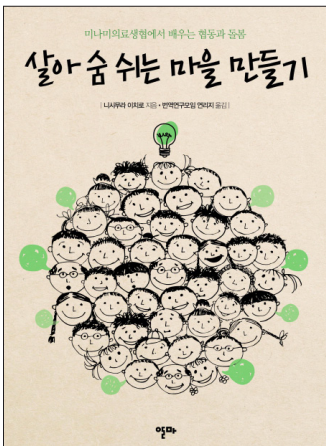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정광민 옮김 (2013)
그물코 | 400쪽 | 150 x 200 | 16,000원

[협동조합 고전 총서 1]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역사와 사람들 (원제)Self-help by the people : The history of the Rochdale Pioneers

협동조합운동의 세계적 고전, 협동조합 사람들의 필독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역사와 사람들〉 첫 완역판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것이다. 영국 랭커셔 주의 작은 마을 로치데일에서 노동자 28명이 28파운드를 가지고 만든 세계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이며, 국제협동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로치데일 원칙'을 확립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의 기록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다.

이 책의 제1부는 1857년에 간행되었고, 제2부를 더한 증보판은 1893년에 간행되었다. 제1부가 나온 뒤 150여 년 동안 이 책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헝가리, 일본 등 협동조합 선진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완역판이 나온 것인데,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협동조합고전총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니시무라 이치로 저, 번역연구모임 연리지 옮김 (2013)
알마 | 224쪽 | 규격 외 판형 | 13,500원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협동조합 시대, 미나미의료생협의 놀라운 이야기!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이 책은 협동조합의 시대에 좋은 사례로 미나미의료생협이 50년 동안 얻은 성과를 소개한다. 의료, 돌봄과 복지, 건강한 몸 만들기, 지역 만들기와 생협 만들기 같은 주제로 시골의 낡고 작은 진료소였던 곳에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종합병원이 되기까지 미나미의료생협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고 한국의 의료생협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 본다.

미나미의료생협은 시골의 작은 진료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조합원 6만여 명, 900개의 반 모임 80여 개 지부, 10개 이상의 불룩을 형성하고 있으며 1일 방문 환자 수는 약 1,300여명 가량이다. 미나미의료생협의 시설, 의료진 등의 관계자들은 내원자나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복지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서로 협력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미나미의료생협의 사례를 통해 한국 의료생협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며 협동조합의 시대에 한국의 협동조합론, 생협론이 성장하고 현실화 되는데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줄 것이다.



CO-OPERATIVES JOURNAL vol.14 Spring 2014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Seeking a Desirable Model of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and Co-operative Movement

JANG, Wonbong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Economy and the Direction of Co-operative Movement

HA, Seungwoo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ocial Economy

KIM, Sungkee

Main issues and problems of Korean Social Economy

KIM, Youngsik

Round-table :

Toward a Desirable Model of Social Economy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Podcast(coopcast) <http://icoop-institute.iblog.com>

Facebook <http://www.facebook.com/icoopinstitute>

www.icoop.re.kr



재생종이로 만든 책